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현안분석

경상수지적자와 거시경제운영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정부운영

- 국제적 인식과 평가 -

최근 환율변동이 수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 정책연구

● 재정통계

자산재평가세 관련 통계

C O N T E N T S

권두칼럼

2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 /손원익

현안분석

6 경상수지적자와 거시경제운영 /박종규

26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정부운영 - 국제적 인식과 평가 /장근호

51 최근 환율변동이 수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김종만

정책연구

65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 /유시권

정책흐름

71 1996년 국세실적(잠정)

79 1997년 시행 중소기업 지원세제

81 199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85 91일물 단기국채 발행

87 금융개혁의 추진실적과 주요과제

99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정통계

102 자산재평가세관련 통계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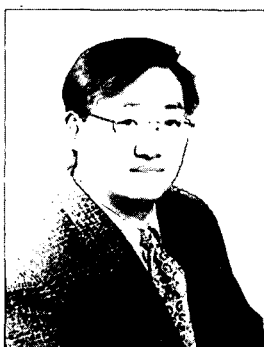
손원익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근 들어 우리 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비용·저효율」로 특징지어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고비용구조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금융비용, 임금비용, 물류비용 및 토지비용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업의 금융비용은 금리와 차입금 의존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일본과 같은 선진외국이나 대만과 같은 경쟁국에 비하여 차입금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담하는 금리도 높다. 이러한 막대한 금융비용은 우리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의 금융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금융비용률)은 5.6%에 달하는 반면 일본기업의 금융비용률은 1.6%, 대만은 1.7%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25.9%에 지나지 않아서 일본 32.3%, 미국 37.5%, 대만 53.4%와 비교해 볼 때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취약한 재무구조는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수익성의 악화, 기술개발력과 생산성의 잠식을 유발하며 기업리스크가 국민경제리스크로 전가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경기침체에 장기적 투자보다 위험도가 높은 단기적 투기성



투자를 선호하게 되는 도덕적 위해(moral hazard)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또한 경기침체시 파산가능성이 높아져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져온다. 이와 더불어 적은 자본으로 문어발식 경영에 나서고 이를 계열기업간 상호채무보증으로 뒷받침하는 악순환구조를 통해 경제력 집중과 여신편중 문제를 유발시키고 기업 자체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금융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금리인하와 차입금 의존도의 축소가 병행되어야 한다. 금리의 인하만을 단행할 경우 기업은 차입에 의한 재원조달비용의 저하로 오히려 차입을 선호하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의 인하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차입금 의존도의 축소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게 된 주원인은 금융시장의 비정상적 기능과 과거에 경험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있으므로 정부당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금융시장의 왜곡을 제거하여 금리의 가격기능을 회복시키고 물가안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기업합병·인수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자금경색이나 도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을 정부의 구제금융을 통하여 구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시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게 된 주원인은 금융시장의 비정상적 기능과 과거에 경험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있으므로 정부당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금융시장의 왜곡은 제거하여 금리의 가격기능은 회복시키고
튼튼한 인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장의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기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정상화도 재무구조 개선의 필수적 요건이다.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려면 공급물량의 조절 등과 같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자가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기차익을 위한 투기성 투자형태를 배당소득을 위한 장기적 투자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시가배당제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금융시장의 정상화 방안에 추가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상의 장·단기적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현행 세제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고 타인자본을 유리하게 대우하고 있다. 우선 법인단계에서 보면 타인자본의 사용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산입이 되는 반면 자기자본의 사용에 대한 배당은 손금산입이 되지 않고 있다. 주주단계에서도 대부분의 이자소득은 저율분리과세되는 반면 배당소득의 경우는 종합과세되는 비중이 이자소득에 비하여 훨씬 커서 배당소득에 대한 평균세율이 이자소득에 비하여 높은 상황이다. 1994년의 경우 전체 금융소득의 96.0%가 분리과세되었는데 이자소득은 99.1%, 배당소득은 56.8%가 분리과세되었다. 이와 같이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모두 타인자본을 우대하여 기업이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을 선호하게 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제 측면에서 기업재무구

조의 왜곡을 막고 나아가 재무구조의 개선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세제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해서 중립적이 되도록 고안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은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각각 고려되어야 한다. 법인단계에서는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차입금 배수의 비중만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자기자본 비율의 비중만큼 배당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주주단계에서는 모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전에는 일반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은 대부분 분리과세하였고 전술한 바와 같이 분리과세되는 비중도 이자소득이 훨씬 컸으므로 세제가 중립적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으로 세제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중립적일 수 있는 정책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분리과세상품의 허용, 높은 기준금액의 책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강화하여 법인단계에서의 세제상 차별이 주주단계에서 해소되도록 하는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경상수지적자와 거시경제운영 / 박종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정부운영 - 국제적 인식과 평가 / 장근호

최근 환율변동이 수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 김종만

EOL
STROB
7:6
(TV)

EM
MOUN
FEED
TO P

경상수지적자와 거시경제운영

박종규/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금년 2월 25일까지의
통관기준 무역적자는
전년동기보다 54%
늘어난 66억 4천만달러에
달하는 등 국제수지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I. 경상적자의 현황

1996년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237억달러에 달하였다. 최근 경상적자폭의 확대는 무역수지에 있어서 수출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기하강 국면에서와는 달리 수입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는 한편 무역외수지도 운수서비스와 여행수지의 악화에 따라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표 1〉 1995~1996년중 국제수지 추이

(단위:억달러, BOP기준)

	1995년	1996년
경상수지	-89.5	-237.2
무역수지	-47.5	-152.8
(수출)	1232.03(31.5)	1282.50 (4.1)
(수입)	1279.49(32.1)	1435.28(12.2)
무역외수지	-36.4	-76.8
이전수지	-5.6	-7.6
자본수지	134.2	172.3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
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II. 무역수지

우선 무역수지에 있어서 1996년 수출은 1/4분기중에는 20.3% 증가하여 1995년 4/4분기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2/4분기부터는 반도체가격의 급락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3/4분기에는 감소세를 시현하였으며 그 중 반도체수출은 1/4분기중에는 56.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4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4/4분기에는 40.1%의 감소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품목의 수출은 1/4분기중 13.8%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3/4분기에는 1.3%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4/4분기에는 12.7%로 회복되었다.

특히 반도체수출은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 19.3% 감소하여, 반도체가격 급락으로 인한 수출차질규모는 128억 3,3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표 2〉 1995~1996년도 분기별 수출증가율

(통관기준, 단위 : %)

	연간	1/4	2/4	3/4	4/4
1995년 총수출	30.3	31.7	34.5	36.4	20.7
· 반도체	70.3	64.8	70.1	83.7	67.8
· 반도체 제외	24.0	27.2	29.4	28.5	12.7
1996년 총수출	3.7	20.3	3.5	-7.8	2.1
· 반도체	-19.3	56.9	-17.3	-45.4	-40.1
· 반도체 제외	8.7	13.8	7.4	1.3	12.7

특히 반도체수출은 국제가격(16MD 기준)이 1995년 말 50.6달러에서 1996년 말 9.25달러로 81.7% 하락한 데 따라 금액기준으로는 178억 4,300만달러로 전년대비 19.3%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이외 품목의 수출은 1,118억 7,200만달러로 8.7% 증가하여 총수출은 1,297억 1,500만달러로 전년비 3.7% 증가하였다. 여기서 반도체 이외의 품목은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의 국제가격 하락, 엔저지속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미국·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증가세 둔화 등 대외교역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초 전망(통산부) 증가율 8.1%보다 높은 8.7%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호조세를 보였다. 이처럼 반도체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수출차질규모는 128억

1996년의 수출부진의 원인은 반도체수출 실적이 그러하듯이 수출단가의 하락에서 찾을 수 있다.

3,300만달러에 달하여 전체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표 3〉 1996년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단위 : 백만달러)

	1995	1996
반도체 수출	22,115 (70.3)	17,843 (-19.3)
반도체 제외수출	102,943 (24.0)	111,872 (8.7)
수출	125,058 (30.3)	129,715 (3.7)

주: () 안의 숫자는 전년비 증가율임.

1996년간의 수출부진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실적이 그러하듯이, 수출단가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의 국제가격 하락이 크게 하락한 데 따라 11.3% 하락한 반면, 수출물량은 16.5% 상승함으로써 주로 단가의 하락에서 찾을 수 있다.

〈표 4〉 물량 및 단가요인별 수출동향

(단위 :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수출증가율	10.5	6.6	7.3	16.8	30.3	3.7
단가상승요인	0.6	-1.6	0.4	1.7	6.1	-11.3
물량증가요인	9.9	8.4	6.8	14.9	26.2	16.5

자료: 한국은행

품목별로는 선박을 제외한 중화학공업제품들의 수출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대폭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반전하였다. 이 중 자동차, 선박, 산업용전자, 유류제품, 플라스틱제품, 섬유사 등은 두 자리수의 수출신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섬유제품, 신발, 완구·인형, 신변용품, 합성수지, 가방 등은 대개도국에 대한 가격경쟁력 열위 때문에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표 5〉 품목별 수출 동향(통관기준)

(통관기준, 단위 : 억달러)

	1995	1996
전체수출	1,270.6(30.3)	1,297.15(3.7)
중화학공업제품	907.9(37.6)	929.7 (2.4)
· 전자제품	262.2(44.3)	244.2 (-6.8)
· 화공품	71.9(46.6)	70.7 (-1.6)
· 자동차	90.7(57.5)	114.6 (26.4)
· 기계류	138.7(34.4)	153.7 (10.8)
· 금속제품	99.7(28.1)	73.0(-26.8)
· 선박	55.3(11.9)	71.3 (28.8)
경공업제품	293.5(14.0)	315.6 (7.5)

주: () 안의 숫자는 전년비 증가율

경기하강에도 불구하고 수입둔화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정보화, 물류, 통신 등 서비스 관련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에 있어서는 원유·석유제품 등 석유류의 수입이 전체 원자재수입의 증가를 주도하였고 자본재 가운데 유무선통신기기, 컴퓨터주변기기, 반도체 관련부품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비재 수입은 승용차, 의류, 화장품, 곡물류 등이 소비수요의 고급화 및 국제가격 상승 등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등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증가세가 감소되지 않았다.

이처럼 수입둔화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경기하강으로 제조업 생산시설확장용 자본재의 수입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컴퓨터 등 정보화 관련시설, 하역기계와 같은 물류시설, 통신시설 등 서비스 관련 자본재 수

〈표 6〉 1996년 1~10월중 주요 자본재 수입동향

(단위 : 억달러)

주요 수입감소 품목		주요 수입증가 품목	
원동기	20.8(-11.1%)	컴퓨터	32.7(20.8%)
섬유기계	6.3(-34.5%)	유선통신기기	6.2(32.0%)
특수공업기계	13.8 (-2.0%)	무선통신기기	14.0(14.3%)
전기계측기	10.0(-29.8%)	정밀기기	38.6(20.0%)
		하역기기	11.2(25.7%)

고급의류, 승용차, 화장품, 고급가구·신발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우리나라 소비재 수입 중 대EU·대미·대일수입 비중이 59.7%에 달하고 있다.

입이 전체 자본재 수입을 주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원자재에 있어서는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출액 증가율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의 증가가 높았고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주력상품의 생산이 둔화되는 대신 재고를 증가시킴에 따라 부품 및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96년 1~10월중 반도체의 수출이 금액기준으로는 11.2% 감소하였으나 물량기준으로는 110.8% 증가하여 이에 따른 웨이퍼 등 초소형전자회로 부품의 수입이 물량기준으로 17% 상승, 가격기준으로 2.2% 상승하여 금액기준으로 총 18.3%만큼 상승하였다. 한편 화장품의 수출이 금액으로는 1.9% 감소하였으나 물량기준으로는 18.0% 증가하였는데 이것의 원재료인 원유수입이 물량기준으로 13.6%, 단가기준으로 9.9% 상승하여 전체금액이 25.1%만큼 상승하였다.

한편 1996년 1~10월중에는 고급의류(4억 9천만달러:30.0%), 승용차(3억 4천만달러:68.5%), 화장품(2억 7천만달러:49.6%), 고급가구(1억 3천만달러:23.1%), 고급신발(1억 4천만달러:62.4%)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나 우리나라 소비재 수입 중 대EU·대미·대일수입의 비중이 59.7%에 달하는 등 소비재 수입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로부터 의류(대중국 수입: 4억 8천만달러(38.5%), 대동남아 수입: 1억 9천만달러(98.1%)), 신발(대중국 수입: 7천만달러(71.2%), 대동남아 수입: 5천만달러(46.9%)) 등의 저가품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1996년도 수입증가요인을 보면, 총수입 단가는 1995년에 비해 0.7% 감소하였으나 소비재 수입단가는 4.2% 증가하였고 수입물량은 원유 및 소비재 수입증가 등으로 11.6% 증가하여 전체수입의 증가는 주로 물량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수입 용도별로는 수출부진에 따라 내수용 증가율이 수출용 증가율을 상회하여 수출용 수입비중은 1995년에 비해 0.4% 포인트 하락한 32.6%를 기록하였다.

〈표 7〉 요인별 수입증가 추이

(단위 :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1~11
수출증가율	16.7	0.3	2.5	22.1	32.0	10.8
단기상승요인	0.0	-1.6	-3.8	0.5	8.9	-0.7
· 원자재	-0.8	-4.7	-5.4	-0.4	11.5	-0.6
· 자본재	3.3	3.7	-0.1	2.2	6.9	-2.0
· 소비자재	-5.3	0.0	-5.7	0.3	4.7	4.2
물량증가요인	16.7	2.0	6.5	21.5	21.2	11.6
· 원자재	16.1	3.0	10.4	15.0	19.0	10.4
· 자본재	14.5	-1.6	-3.0	29.5	23.9	11.8
· 소비자재	26.8	5.3	9.7	23.8	22.0	16.4

소비재 수입 가운데
중국, 동남아
등지로부터의
저가소비재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표 8〉 수출용 및 내수용별 수입추이

(단위 :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e)
전체수입 증가율	13.6	16.7	0.3	2.5	22.1	32.0	10.8
수출용 수입증가율	0.2	9.4	4.0	8.3	16.4	37.5	8.8
내수용 수입증가율	21.4	20.2	-1.3	-0.2	25.0	29.5	11.8
수출용 수입비중	32.3	30.3	31.4	33.2	31.7	33.0	32.6
내수용 수입비중	67.7	69.7	68.6	66.8	68.3	67.0	67.4

대선진국 무역적자가
42% 늘어나는 한편,
대개도국 무역흑자는
44% 감소하였다.

〈표 9〉 품목별 수입 동향(통관기준)

(단위 : 억달러, %)

	1995년	1996년
전체수입	1,351.2(32.0)	1,503.4(11.3)
자본재	535.6(32.5)	589.0(10.0)
· 기계류	231.6(36.4)	248.3(7.2)
· 전기전자	195.2(35.6)	213.9(9.6)
· 수송장비	47.3(15.8)	54.2(14.5)
· 정밀기기	38.9(27.1)	46.8(20.2)
원자재	675.8(32.6)	745.0(10.2)
· 원유	108.1(21.7)	144.3(33.5)
· 석유제품	38.0(22.8)	44.4(16.9)
· 경공업 원료	67.5(27.5)	61.1(-9.5)
· 화학제품	83.4(28.7)	86.0(3.1)
· 섬유류	37.1(17.5)	35.4(-4.6)
· 철강재	67.3(42.9)	67.6(0.5)
· 비철금속	47.0(49.8)	42.1(-10.5)
식료 및 소비재	139.8(27.8)	169.4(21.2)
· 곡물	24.5(28.7)	33.6(37.2)
· 직접소비재	41.2(20.9)	47.3(14.9)
(조제식품)	8.4(25.2)	9.8(16.3)
· 비내구소비재	24.2(50.8)	32.3(33.3)
(의류)	10.1(54.3)	14.3(41.3)
(화장품)	2.3(52.7)	3.5(50.0)
· 내구소비재	49.9(24.0)	56.2(12.6)
(가정용전자)	13.9(32.0)	13.6(-2.4)
(승용차)	2.5(119.5)	4.1(68.0)

지역별로 보면 대선진국 수출입은 수출(27.9%→-8.2%) 수입(32.5%→7.8%) 모두 전년에 비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적자폭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290.3억달러→-413.8억달러) 대개도국 수출입 역시 수출(32.7%→15.6%) 수입(31.1%→18.6%) 모두 전년에 비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흑자폭은 감소하였다(190.5억달러→107.6억달러). 이 중 대선진국 수출은 전자제품, 금속제품 등 중화학공업제품의 계속된 부진으로 전지역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며 대개도국 수출은 중동(자동차), CIS를 제외하고는 중국, 동남아와 중남미지역에서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한편 선진국 수입 가운데 대일수입은 화학제품, 철강재 등 원자재가 크게 감소한 데다 자본재도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대EU 수입은 전반적인 둔화 추세속에서도 소비재와 자본재는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함에 따라 두자리 수의 증가세를 보였고 개도국 중에서 대동남아 수입은 원자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대중동 수입은 원유도입의 꾸준한 증가로 늘어났으며 대중국 수입도 자본재를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일수입은 화학제품, 철강재 등 원자재가 크게 감소한 데다 자본재도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감소하였다.

〈표 10〉 지역별 수입증가 추이

(단위 : %)

	수출		수입	
	1995년	1996년	1995년	1996년
선진국	624.2(27.9)	572.9 (-8.2)	914.5(32.5)	986.7 (7.8)
미국	241.3(17.4)	216.7(-10.2)	304.2(41.0)	333.1 (9.5)
일본	170.5(26.1)	157.7 (-7.5)	326.2(28.5)	314.5 (-3.6)
EU	163.0(47.4)	153.2(-6.0)	182.0(24.4)	212.0(16.5)
개도국	626.3(32.7)	724.3 (15.6)	435.8(31.1)	516.7(18.6)
동남아	325.4(40.1)	354.5 (8.9)	135.6(31.6)	159.4(17.5)
중남미	73.7(14.6)	89.6 (21.6)	44.4(35.3)	43.7 (-1.6)
중국	91.4(47.4)	113.8 (24.4)	74.2(35.9)	85.4(15.0)
중동	49.3(26.1)	57.8 (17.3)	118.5(27.9)	150.8(27.2)
CIS	17.6(40.6)	27.2 (54.3)	22.7(49.6)	22.6(-0.2)
동유럽	12.2(96.9)	20.4 (58.5)	3.8(21.0)	4.2(11.3)

대선진국 중화학공업제품 수출액은 전년동기보다 8.2% 감소한 342억 3천만달러에 그쳤는데 이는 반도체, 철강, 화공품의 수출가격이 하락한 데 기인한다.

1996년 들어 1~10월까지 대선진국 중화학공업제품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8.2% 감소한 342억 3천만달러에 그쳤는데 이는 대선진국 수출품목인 반도체(-51.1%), 철강(-7.2%), 화공품(-16.8%)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대선진국 수출이 하락한 데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표 11〉 반도체, 철강, 화공품의 대선진국 수출

(단위 : %, 억달러)

	품목별 수출 비중				3대품목 수출액
	반도체	철강	화공품	합계	
대선진국 수출	15.8	5.5	2.7	24.0	114.8(-21.5)
대미 수출	25.0	4.4	1.5	30.9	55.9(-8.4)
대일 수출	13.5	9.1	3.6	26.2	34.6(-27.5)
대EU 수출	9.0	3.3	3.4	15.7	19.8(-21.0)

주: 1~10월중 실적 기준, () 안의 숫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또한 대선진국 경공업제품의 수출시장 상실도 무시할 수 없는데 대미·대일 경공업제품 수출은 1996년 1~10월중 크게 감소(미국: -13.1%,

〈표 12〉 주요 경공업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1989	1993	1995	1996. 1~9
미국				
편물제 의류	13.1	6.6	4.6	3.8
비편물제 의류	10.6	6.3	4.6	4.0
가족제품	35.8	16.4	7.0	5.0
신발류	25.7	9.3	4.2	2.8
일본				
편의물 의류	37.5	21.5	15.5	13.4
비편물제 의류	30.2	9.6	4.8	3.3
가족제품	41.2	24.7	13.4	9.8
신발류	36.5	22.0	14.4	12.4

일본: -11.3%)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경공업제품의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 중 미국시장은 멕시코(의류), 중국(가죽제품, 신발), 이탈리아(가죽제품) 등이, 일본시장은 중국(신발, 의류, 가죽제품), 이탈리아(의류, 가죽제품) 등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경공업제품의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들 시장은 중국, 이탈리아 등이 잠식해 가고 있다.

Ⅲ. 무역외수지

무역외수지는 무역외수입(貿易外受入)이 해운경기 하강 및 여행수입 부진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무역외지급은 투자수익과 운항경비를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적자폭은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중 운수서비스 수입은 대선료 수입감소로 전년수준에 그친 반면, 지급은 유가상승에 따른 운항경비 증가 등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표 13〉 무역외수지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1995년	1996년p
무역외수지	-3,640.4	-7,682.6
(수입)	29,864.3(32.4)	30,648.6 (2.6)
(지급)	33,504.7(36.5)	38,331.2(14.4)
운임 및 보험	4,047.3	4,256.4
운수서비스 ¹⁾	-4,095.8	-5,994.3
여행 ²⁾	-1,190.3	-2,615.2
〈유학·연수〉	〈-907.9〉	〈-1,101.7〉
투자수익	-2,397.6	-2,550.0
기타용역	-4.0	-779.5

주: 1) 여객운임, 항민경비, 운항경비, 용선료 등 화물운임을 제외한 운수관련 서비스를 포괄.
 2) 여행수지에는 유학·연수관련 수지가 포함되어 있음.

1995년까지는 유학·연수수지가 여행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96년 들어서는 이를 제외한 순수 여행수지 적자가 전체 여행수지 적자 확대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여행수지는 특히 1996년 들어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어 전년의 두 배 가 넘는 수준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체경상적자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1995년까지는 유학·연수수지가 여행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96년 들어서는 이를 제외한 순수 여행수지 적자가 전체 여행수지 적자 확대를 주도하였는데 출국자수 증가율과 1인당 여행경비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 반면 입국자수는 낮은 증가에 그쳐 여행경비 지급이 수입을 대폭 상회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14〉 최근의 여행수지 관련지표 추이

(단위 : 억달러, 만명, 달러)

	1993	1994	1995		1996.1~10
			1~10	연간	
여행수지(A)	-5.7	-11.7	-9.3	-11.9	-21.4
수입	29.6 (10.2)	33.4 (12.7)	43.1 (62.1)	51.5 (54.2)	41.2 (-4.4)
입국자수	333 (3.1)	358 (7.5)	314 (6.0)	375 (4.8)	306 (-2.7)
1인당경비	890	933	1373	1372	1349
지급	35.3 (10.0)	45.1 (27.7)	52.4 (42.4)	63.4 (40.5)	62.7 (19.5)
출국자수	242 (18.4)	315 (30.3)	314 (19.9)	382 (21.1)	390 (24.0)
1인당 경비	1460	1431	1669	1660	1609

주: 국제수지표상의 여행경비 지급액/출(입)국자수.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입국자수의 감소는 입국자 중 가장 큰 비중(1995년: 44.1%)을 차지하는 일본인 입국자가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감소(-10.0%)한 데 주로 기인하여 1995년 하반기 이후 일본인들이 가격이 싼 중국, 동남아로 여행지를 옮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6년 1~10월중 출국자 1인당 여행경비는 1,609달러로 1995년(1,660달러)보다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는데 이는 외국인 입국자의 1인당 국내여행경비(1995~96년중 1,360달러 내외)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미국(937달러), 독일(640달러), 싱가포르(1,512달러) 등 주요국의 1인당 여행경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수출 주력상품의 국제시세 하락이 국제시장에서의 공급과잉에 따른 것이고 공급과잉이 주력상품 생산능력의 과잉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 15〉 주요국의 1인당 여행경비 지급액

(단위 : 달러)

일본(1996)	대만(1995)	미국(1994)	독일(1994)	싱가포르(1994)
2,401	1,630	937	640	1,512

주: 국제수지표상의 여행경비 지급액/출국자수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IMF, *Balance of Payments Yearbook*; 일본 총무청통계국, 『일본통계월보』; 대만 행정원주계처, 『중화민국통계월보』.

이상과 같은 논의를 정리하자면 1996년중 경상적자의 확대는 주로 수출단가하락에 따른 수출둔화와 함께 수출물량의 확대에 따라 수입물량도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요약된다. 대선진국의 수출이 부진하였던 것은 중화학공업 제품에 있어서 주력상품의 국제시세 하락과 경공업 제품에 있어서 개도국에 의한 시장잠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중 주력상품의 국제시세 하락이 단지 우연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만약 국제시장에서의 공급과잉에 따른 것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공급과잉이 주력상품을 생산하는 생산능력이 국제적으로 과잉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면 이는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던져 주는 것이다.

Ⅳ. 시뮬레이션 실험과 거시경제 운영에 대한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단가 하락요인은 1996년중 경상적자 237억달

경상적자의 개선만을
고려한다면
재정긴축보다는
통화긴축이, 재정긴축에
있어서도 경상지출의
감소보다는 자본지출의
감소가 훨씬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 가운데 약 130억달러 정도(반도체의 경우)를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경상적자 중 수출단가 하락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100억달러의 적자는 과연 불가피하였는가를 평가해 보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원의 분기별 거시경제모형(KIPF97Q)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실험을 하였다.

시뮬레이션의 내용은 경기과열 기간이었던 지난 1994~1995년간에 통화와 재정에 있어서 거시경제 운영을 보다 긴축적으로 했었다더라면 경상수지를 비롯한 1996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를 실험해 보는 것이다. 긴축적 운영의 내용은 우선 1994~1995년중 총통화 분기말 월평잔의 증가율을 실적보다 2% 포인트만큼 낮게 가져가는 것과(표 16)) 통화방출량 감소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정지출을 감소시켜 보는 것이다. 여기서 감소시키려는 재정지출은 통합재정수지 가운데 중앙정부부문의 세출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실험에서는 세출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나누어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비중을 일정하게 하면서 전체적인 세출규모만을 낮출 경우(표 17)), 경상지출만을 감소시킬 경우(표 18)), 그리고 자본지출만을 감소시킬 경우(표 19))로 구분하여 보았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분석기간(1987년 1/4 분기~1996년 4/4분기)의 초기에는 특히 자본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았던 관계로 총통화증가율의 2%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소시키려면 자본지출의 값이 음수를 시현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실험의 편의상 재정긴축규모는 총통화 증가율의 1% 포인트에 해당하는 규모로 설정하였음에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이 실험은 통화와 재정을 함께 변화시켜 보는 정책조합실험은 아니며 변화시기를 1994~1995년중으로 국한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를테면 1994~1995년중 총통화증가율을 2% 포인트 낮추고 나서는 1996년부터의 통화증가율은 실적치를 사용하였으며 재정지출 실험에 있어서도 1996년부터는 실적치를 사용하였다.

V. 정책효과 비교

이 실험결과에 따르면 경상적자의 개선만을 생각한다면 재정긴축보다는 통화긴축이 유용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긴축에 있어서도 경상지출의

감소보다는 자본지출의 감소가 훨씬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상지출의 감소는 재정수지의 개선과 실질금리 하락이 있을 뿐 경상적자 축소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4~1995년의 기간중 세출을 총통화량의 1%만큼 줄였을 때 그 액수는 대략 연간 6조 5천억원에 달하는데 그로 인하여 실질성장률은 1994년중 0.14% 포인트만큼 감소되다가 1995년 들어서는 오히려 0.27% 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출의 감소로 인하여 정부소비는 물론 공공부문 투자가 줄어들므로 실질성장이 둔화되기도 하지만 세출의 감소는 재정수지의 개선을 통하여 실질금리를 하락시키므로 그만큼 성장둔화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효과가 합하여져서 경상수지는 통화량 긴축의 경우와는 달리 1995년중 2억 1천만달러밖에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세출을 오직 경상지출감소를 통해 줄였다면 경상수지는 1차연도에 4,700만달러 정도 개선되다가 2차연도 들어서는 경상수지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상지출의 감소는 경기변동을 중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세출을 자본지출의 감소를 통해 줄인다면 1차연도의 실질성장률은 0.67% 포인트 감소되며 2차연도에도 0.66% 포인트 만큼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명목금리 및 실질금리하락 효과도 매우 뚜렷할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개선폭도 1차연도에 4억 5천만달러, 2차연도에 25억 3천만달러, 3차연도에 17억 6천만달러씩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Ⅶ. 거시경제 운영에 대한 시사점

〈표 16〉~〈표 19〉가 주는 시사점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통화와 재정의 긴축을 시도하는 첫 해의 경상적자 개선폭은 매우 작다는 것이다. 즉 〈표 16〉과 〈표 19〉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경제성장률이 0.7%~0.8% 포인트만큼 낮아진다 하더라도 경상적자 개선규모는 6억달러를 넘지 않으며 긴축적 경제운영의 효과는 그 다음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 16〉에 따르면 1994~1995년중 통화긴축을 하였을 경우

세출의 감소로 인하여 실질성장이 둔화되기도 하지만 재정수지의 개선을 통하여 실질금리를 하락시키므로 성장둔화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반도체 가격하락이 설명하지 못하는 100억달러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1994~1995년중 경기과열을 진정시키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1994년중에 경상수지는 5억 5천만달러밖에 개선되지 않다가 1995년 들어서는 34억 8천만달러의 개선효과를 거두게 되고 이러한 개선효과는 1996년중의 통화증가율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1996년에까지 이어져 1996년중의 경상수지를 41억 5천만달러 정도 개선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상적자 개선을 위해 통화나 재정정책이라는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서 실질 성장률을 1% 포인트 정도 희생시킨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얻을 수 있는 경상적자 개선폭은 10억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정책기조와 경상적자규모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

두번째 시사점은 1994~1995년의 기간중 통화와 재정의 긴축을 통하여 실질 성장률을 1% 포인트 정도씩만 낮게 가져갔더라면 1996년의 경상적자는 약 50억달러만큼 개선되었을 것이므로 반도체 가격하락이 설명하지 못하는 100억달러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1994~1995년 기간중 경기과열을 진정시키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IMF방식의 재정팽창지수로 재정기조를 판단하여 보면 1994년의 재정기조는 중립적이었으나 1995년의 재정기조는 팽창적인 것으로 선회하였다고 판단되며 재정팽창규모도 적지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통화기조를 판단하는 지표에 의존하여 1994~1995년을 돌아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통화당국이 경기과열을 우려하여 통화증가율을 억제한다는 천명(announcement)은 없었으며 실질금리를 살펴보아도 1994년 하반기부터는 1980년대 이후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의 실질금리를 유지한 것으로 미루어 1994~1995년중의 통화기조는 긴축적이라기보다는 팽창적인 성격이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50억달러만큼 개선된다고 해도 1996년중의 경상적자는 180억달러에 달했을 것이므로 적자기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률 역시 1996년 들어 0.8% 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1996년의 경우 7.8% 경제성장에 경상적자 180억달러 그리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1%가 되었을 것이며 임금상승률도 1% 포인트 이상 억제되었을 것이다.

1996년도의 경상적자폭 확대는 반도체의 국제시세 하락 때문이라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들곤 하지만 1996년도와 그리고 현재까지의 경상수지 적자확대의 요인 가운데에는 1994~1995년 기간중의 경기과열이라는 순환적(cyclical)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존재하며 그 크기는 국제시세하락이 설명하

지 못하는 경상적자의 절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거시경제운영을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운영해 주는 것이 하나의 경기순환을 거치고 난 뒤의 경제운영을 얼마만큼 편하게 해주는가를 알 수 있으며 경기과열의 부작용이 단순히 물가상승을 통해서뿐 아니라 국제수지의 악화, 그것도 시차효과에 의하여 경기과열이 지나가고 경기침체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급격한 국제수지의 악화로 나타나 경제운영방향의 선택을 대단히 어렵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경기가 과열일 때 팽창하고 경기침체에 긴축하는 경기동행적(pro-cyclical) 경제운영패턴은 그때 그때의 경제·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다 보니 그렇게 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바이지만 어쨌든 경기동행적 경제운영은 우리 경제의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구조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제도나 법규를 고치는 것만이 경제구조 개선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는 것도 경제구조 개선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며 이제는 경제운영의 구조변화, 즉 경기역행적 경제운영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KDI

제도나 법규를 고치는 것이 경제구조 개선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으며 경기동행적 거시운영패턴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표 16〉 1994~1995년중 통화량 증가율을 2% 포인트 낮추었을 때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단위 : %, 백만달러, 천명)

	잠재 성장률	실질 GNP	경상 GNP	민간 소비	정부소비 (불면)	정부소비 (경상)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총고정 자본형성
1994	-0.08	-0.78	-1.22	-0.31	0.41	0.00	-0.48	-3.05	-2.04
1995	-0.34	-1.26	-2.34	-0.89	-0.87	0.00	0.01	-4.63	-2.60
1996	-0.21	0.77	0.60	-0.12	0.17	0.00	1.07	3.16	2.15
	재화와 용역의 수출	재화와 용역의 수입	△대미 환율	△경상 수지	△무역 수지	상품수입 (BOP)	무역외 수지	상품 수출	상품 수입
1994	-1.23	-0.83	-7.09	551.25	421.20	-509.03	130.10	-0.11	-0.66
1995	-1.71	-2.49	-14.58	3476.80	3275.88	-3739.20	200.85	-0.37	-3.23
1996	1.14	0.22	-10.25	4153.43	3441.13	-4183.33	712.89	-0.21	0.13
	상품수출 (통관)	상품수입 (통관)	M2 (평균)	M2 (말잔)	△회사채 수익률	△실질금 리(CPI)	△실질금 리(WPI)	유가 증권	민간 대출
1994	-0.11	-0.66	-1.85	-0.08	-0.07	0.13	0.20	-0.62	-0.41
1995	-0.34	-3.20	-2.00	-0.20	-0.43	0.19	0.14	-0.96	-0.52
1996	-0.18	0.26	-0.13	1.13	-0.53	-0.13	-0.47	-0.57	-0.15
	△총조세 수입	△조세수입 (통합재정)	수지차 (통합재정) ¹⁾	수지차 (통합재정) ²⁾	△취업자 수	전산업 임금	제조업 임금	△실업률	GNP디플 레이터
1994	-378.48	-401.22	-411.74	-423.73	-26.57	-0.24	-0.11	0.01	-0.33
1995	-2179.58	-2188.11	-2262.18	-2279.09	-64.94	-1.56	-0.59	0.01	-0.95
1996	-2625.39	-2552.80	-2747.12	-2734.64	30.89	-1.72	-1.14	-0.03	-0.23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수출 물가	수출 단가	수입 단가			
1994	-0.20	-0.27	-0.15	-0.12	0.94	0.27			
1995	-0.62	-0.57	-0.77	-0.27	0.81	-0.47			
1996	-0.41	-0.06	-0.55	-0.00	-0.68	-0.54			

주 : 1) 중앙정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세입세출)

2) 중앙정부 + 비금융공기업

〈표 17〉 1994~1995년중 중앙정부 세출을 총통화의 1%만큼 줄였을 경우

(단위 :%, 백만달러, 천명)

	잠재 성장률	실질 GNP	경상 GNP	민간 소비	정부소비 (불면)	정부소비 (경상)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총고정 자본형성
	재화와 용역의 수출	재화와 용역의 수입	△대미 환율	△경상 수지	△무역 수지	상품수입 (BOP)	무역외 수지	· 상품 수출	상품 수입
1994	-0.03	-0.14	-0.21	-0.03	-1.61	-1.88	-0.28	-0.23	-0.25
1995	-0.03	0.27	0.22	-0.01	-0.92	-0.95	-0.24	-0.65	0.27
1996	0.04	0.52	0.61	0.13	1.50	1.79	1.07	0.74	0.89
1994	0.13	-0.08	-0.02	75.37	105.24	-107.31	-29.79	-0.00	-0.14
1995	1.34	0.31	0.53	-212.31	-26.01	21.10	-186.02	-0.00	0.17
1996	0.34	0.47	0.57	-821.18	-1168.87	1210.39	347.73	0.04	0.92
	상품수출 (통관)	상품수입 (통관)	M2 (평잔)	M2 (말잔)	△회사채 수익률	△실질금리(CPI)	△실질금리(WPI)	유가 증권	민간 대출
1994	-0.00	-0.14	-0.01	-0.76	-0.16	-0.12	-0.18	-0.51	-0.01
1995	-0.00	0.19	-0.02	-1.17	-0.56	-0.62	-0.57	-0.58	-0.23
1996	0.04	0.93	0.00	-0.35	-0.30	-0.48	-0.28	-0.22	-0.2
	△총조세 수입	△조세수입 (통합재정)	수지차 (통합재정) ¹⁾	수지차 (통합재정) ²⁾	△취업자 수	전산업 임금	제조업 임금	△실업률	GNP디플레이터
1994	-63.84	-69.77	4076.38	4074.89	-13.24	0.00	-0.03	0.00	-0.05
1995	-53.16	-40.18	4782.43	4783.74	-21.21	-0.02	-0.07	0.01	-0.07
1996	493.71	501.66	500.82	506.49	-18.12	0.03	0.04	0.00	0.06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수출 물가	수출 단가	수입 단가			
1994	-0.04	0.02	-0.00	0.01	0.01	-0.01			
1995	0.06	0.01	-0.01	0.01	-0.08	-0.07			
1996	0.17	-0.02	0.08	-0.03	-0.05	0.21			

주 : 1) 중앙정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세입세출)

2) 중앙정부 + 비금융공기업

〈표 18〉 1994~1995년중 중앙정부 경상지출을 통화량의 1%만큼 줄였을 경우

(단위 : %, 백만달러, 천명)

	잠재 성장률	실질 GNP	경상 GNP	민간 소비	정부소비 (불면)	정부소비 (경상)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총고정 자본형성
1994	-0.03	-0.14	-0.21	-0.03	-1.61	-1.88	-0.28	-0.23	-0.25
1995	-0.03	0.27	0.22	-0.01	-0.92	-0.95	-0.24	-0.65	0.27
1996	0.04	0.52	0.61	0.13	1.50	1.79	1.07	0.74	0.89
	재화와 용역의 수출	재화와 용역의 수입	△대미 환율	△경상 수지	△무역 수지	상품수입 (BOP)	무역외 수지	상품 수출	상품 수입
1994	0.13	-0.08	-0.02	75.37	105.24	-107.31	-29.79	-0.00	-0.14
1995	1.34	0.31	0.53	-212.31	-26.01	21.10	-186.02	-0.00	0.17
1996	0.34	0.47	0.57	-821.18	-1168.87	1210.39	347.73	0.04	0.92
	상품수출 (통관)	상품수입 (통관)	M2 (평잔)	M2 (말잔)	△회사채 수익률	△실질금 리(CPI)	△실질금 리(WPI)	유가 증권	민간 대출
1994	-0.00	-0.14	-0.01	-0.76	-0.16	-0.12	-0.18	-0.51	-0.01
1995	-0.00	0.19	-0.02	-1.17	-0.56	-0.62	-0.57	-0.58	-0.23
1996	0.04	0.93	0.00	-0.35	-0.30	-0.48	-0.28	0.22	-0.21
	△총조세 수입	△조세수입 (통합재정)	수지차 (통합재정) ¹⁾	수지차 (통합재정) ²⁾	△취업자 수	전산업 임금	제조업 임금	△실업률	GNP디플 레이터
1994	-63.84	-69.77	4076.38	4074.89	-13.24	0.00	-0.03	0.00	-0.05
1995	-53.16	-40.18	4782.43	4783.74	-21.21	-0.02	-0.07	0.01	-0.07
1996	493.71	501.66	500.82	506.49	-18.12	0.03	0.04	0.00	0.06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수출 물가	수출 단가	수입 단가			
1994	-0.04	0.02	-0.00	0.01	0.01	-0.01			
1995	0.06	0.01	-0.01	0.01	-0.08	-0.07			
1996	0.17	-0.02	0.08	-0.03	-0.05	0.21			

주 : 1) 중앙정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세입세출)
2) 중앙정부 + 비금융공기업

〈표 19〉 1994~1995년중 중앙정부 자본지출을 통화량의 1%만큼 줄였을 경우

(단위 : %, 백만달러, 천명)

	잠재 성장률	실질 GNP	경상 GNP	민간 소비	정부소비 (불면)	정부소비 (경상)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총고정 자본형성
1994	-0.01	-0.02	-0.06	0.00	-0.92	-0.96	-0.00	0.13	0.08
1995	0.04	0.49	0.54	0.10	-0.06	0.03	-0.12	1.38	0.74
1996	0.07	0.46	0.51	0.16	-0.94	1.12	0.78	0.36	0.54
	재화와 용역의 수출	재화와 용역의 수입	△대미 환율	△경상 수지	△무역 수지	상품수입 (BOP)	무역외 수지	상품 수출	상품 수입
1994	0.10	-0.03	-0.01	30.59	25.83	4.75	-28.88	-0.00	-0.04
1995	1.20	0.45	0.37	-531.18	-523.01	-8.21	506.00	-0.01	0.56
1996	0.45	0.52	1.19	-1471.67	-1739.67	264.59	1733.53	0.01	0.90
	상품수출 (통관)	상품수입 (통관)	M2 (평균)	M2 (말잔)	△회사채 수익률	△실질금 리(CPI)	△실질금 리(WPI)	유가 증권	민간 대출
1994	-0.00	-0.04	-0.00	-0.74	-0.14	-0.13	-0.17	-0.49	-0.00
1995	-0.01	0.57	-0.02	-1.21	-0.48	-0.57	-0.53	-0.51	-0.19
1996	0.01	0.09	-0.00	-0.43	-0.28	-0.40	-0.26	-0.32	-0.18
	△총조세 수입	△조세수입 (통합재정)	수지차 (통합재정) ¹⁾	수지차 (통합재정) ²⁾	△취업자 수	전산업 임금	제조업 임금	△실업률	GNP디플 레이터
1994	-27.70	-26.13	4124.32	4124.29	-7.53	0.01	0.00	-0.00	-0.04
1995	244.13	258.98	5089.95	5089.80	2.35	0.08	-0.02	0.00	0.01
1996	842.46	793.31	815.60	815.59	-11.05	0.13	0.08	0.00	0.04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수출 물가	수출 단가	수입 단가			
1994	-0.01	0.03	-0.00	0.01	0.02	-0.00			
1995	0.09	0.05	0.02	0.02	-0.03	0.03			
1996	0.11	-0.03	0.08	-0.05	-0.04	0.25			

주 : 1) 중앙정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세입세출)
2) 중앙정부 + 비금융공기업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정부운영

- 국제적 인식과 평가 -

장 근 호/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I. 서론

최근 여러 국제연구기관이 평가·공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에 대해 국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여론은 국가경쟁력을 계량화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우리나라 경쟁력이 평가대상국 중 중위권에 분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제경영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¹⁾이 우리나라 정부부문 경쟁력을 33위로 평가하자 일부 언론은 사실까지 동원하여 정부생산성 증대와 규제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²⁾.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논의는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경제·사회 전분야에 걸쳐서 더욱 심도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237억 달러(1996년)에 달하는 무역적자와 '고비용-저효율구조' 그리고 OECD 가입에 따른 국내외 여건변화 등 산적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정부는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까지 제창하고 있고 사회 구성구석에서 우리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건실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

1)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6, 1996.

2) 「정부가 발목잡는 경쟁력」,
『매일경제신문』, 1996. 5. 27.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는 당분간 우리 사회전반의 화두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국가경쟁력에 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논고는 각종 국제보고서에 나타난 국가경쟁력을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한 나라의 경쟁력을 일개 수치로 지수화하는 작업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고 따라서 개발된 지수에 대하여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무역이 제로섬게임이 아닌 국가간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의하여 창출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 경제환경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의 개념을 검토하고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본고는 국가경쟁력지수의 작성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경쟁력지수의 허와 실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개혁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 밖에도 본고에서는 국제보고서상의 일차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운영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소개한다. 이는 정부운영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큰 흐름을 결정짓고 있고 따라서 건실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정부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정부운영에 있어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하여 본고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생산성 제고를 위한 거시적 개선방향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국가경쟁력의 평가요인과 우리나라 경쟁력

1. 각종 국제보고서상의 국가경쟁력

〈표 1〉은 각종 국제보고서상의 주요 국가의 경쟁력 순위(1996년)와 경제성장률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 보고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연구주관 기관의 경쟁력 개념에 따라 사용된 기초자

보다 건실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개혁이 요청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는 우리 사회전반의 화두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IMD의 경우
경제규모가 클수록
순위가 높고 WEF에서는
소국이라도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상위를
차지한다.

료와 경쟁력 평가요인 그리고 이들 요인에 대한 가중치가 상이하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m: WEF)은 향후 5~10년간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신발전이론상의 경제발전 요인을 중시하는 반면 IMD는 국부(national wealth)의 배양능력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의거하여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국제금융 전문지인 『유러머니(Euromoney)』는 투자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부문을 중시하고 있고, 프레이저연구소(The Fraser Institute)는 경제적 자유도(Economic Freedom: EF)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부개입도, 재산권보호, 암시장 등 경제적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³⁾.

경쟁력지수의 작성방식에 대하여 논의하기 앞서서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MD와 WEF는 1995년까지 보고서를 함께 작성한 만큼 이용자료와 대상국가가 매우 유사하다⁴⁾. 그러나 WEF의 경우 경쟁력지수 작성목적이 중단기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데 있으므로 피설명변수인 경제 또는 투자규모, 1인당 국내총생산 등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지 않는 반면 IMD는 이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IMD의 경우 경제규모가 클수록 순위가 높고(미국, 일본) WEF에서는 소국이라도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상위를 차지한다(싱가포르, 홍콩).

이와 같은 현상은 <표 2>에서 좀더 뚜렷이 드러난다. <표 2>는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 그리고 각종 경쟁력지수들의 상관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나타내고 있는데 IMD는 다른 경쟁력지수와 달리 지수수치(index value)가 아닌 순위(ranking)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D 경쟁력지수와 1인당 GDP와의 상관관계수는 0.76으로 그 값이 여타 지수에 비하여 제일 높는데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IMD 지수가 1인당 GDP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WEF와 1인당 GDP는 0.60의 상관관계에 있고 EF는 그 상관관계수가 0.39에 불과하다.

경쟁력지수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1인당 GDP와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가 미약하다. 다만 WEF 지수가 목적으로 하는 잠재적 경제성장률의 설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IMD보다는 WEF 지수가 실제 성장률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쟁력지수들간의 상관관계수는 IMD와 WEF가 0.87로 가장 높고 EF 지수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3) 『유러머니』는 1996년의 경우 178개국의 경제자료, 정치위험도, 부채지표, 신용평가 등을 중심으로 국가별 신임도를 조사하였다.

4) 1996년 WEF(IMD)의 평가대상국은 49(46)개국으로 OECD 국가와 아시아 지역의 신흥개발국가를 주대상으로 하고 WEF는 IMD 국가 이외에 페루, 이집트, 요르단을 포함한다.

〈표 1〉 국제보고서상의 주요국가별 경쟁력 순위와 경제성장률

	WEF (1996)	IMD (1996)	Euro- money (1996)	Economic Freedom (1995)	1인당 GDP (1995)	1인당 실질GDP평균 성장률(1990~1995)
싱가포르	1	2	3	2	26,110	6.61
홍콩	2	3	23	1	24,436	4.48
뉴질랜드	3	11	17	3	16,627	1.30
미국	4	1	5	4	27,532	0.80
룩셈부르크	5	8	1	-	48,259	4.56
스위스	6	9	2	5	42,968	-0.91
노르웨이	7	6	11	31	33,548	3.03
캐나다	8	12	15	9	19,354	0.39
대만	9	18	16	14	12,192	5.78
말레이시아	10	23	25	6	4,211	6.31
호주	12	21	14	11	19,036	1.26
일본	13	4	4	9	40,830	1.01
태국	14	30	26	6	2,797	7.10
영국	15	19	9	6	18,983	0.80
한국	20	27	24	12	9,995	6.42
독일	22	10	7	16	29,504	1.59
프랑스	23	20	10	24	26,980	0.75
인도네시아	30	41	39	32	1,024	6.03
필리핀	31	31	50	22	1,097	0.17
스페인	32	29	19	27	14,345	1.15
멕시코	33	42	53	27	2,541	-1.24
중국	36	26	40	-	554	10.45
이탈리아	41	28	22	32	19,372	1.53
인도	45	38	45	44	346	2.20
브라질	48	37	60	54	4,079	0.78
러시아	49	46	100	-	2,749	-12.67

개별 국가에 관한
경쟁력평가는
보고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6*, 1996;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6*, 1996; James Gwartney and Others,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75~1995*, The Fraser Institute, 1996; "Euromoney," *Euromoney*, March 1996.

국내언론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크게 낙후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국제보고서에 나타난 바로는 그 순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

〈표 2〉 경쟁력지수와 생산수준, 경제성장률과의 단순상관관계

	1인당 GDP	경제 성장률	WEF	IMD	Economic Freedom
1인당 GDP	1				
경제성장률	-0.12	1			
WEF	0.60	0.41	1		
IMD	0.76	0.27	0.87	1	
Economic Freedom	0.39	0.43	0.84	0.68	1

주: IMD에서의 경쟁력지수는 지수순위(ranking)를 의미함.
 자료: 〈표 1〉과 동일함.

이와 같이 개별 국가에 관한 경쟁력평가는 보고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세계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를 고려하는 IMD에 따르면 1996년 우리나라 경쟁력은 27위에 불과하다. 반면 경제규모가 평가요인이 아닌 WEF에서는 우리나라가 20위로 평가되어 있다. 한편 『유러머니』나 Economic Freedom은 그 평가대상국이 100여개국에 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적 자유지수(freedom index)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별 위험도(country risk)에서는 24위를 기록하고 있다⁵⁾.

각종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의 연도별 변화는 〈표 3〉에 있다. IMD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쟁력은 1992년 이후 26~32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27개 OECD 국가 중에서는 20위(WEF는 15위)에 해당된다. 유러머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위험도는 꾸준히 감소하여 1997년에는 18위로 순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3〉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경제적 자유지수의 경우 그 순위가 1980년 당시 28위에서 1995년 12위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Economic Freedom과 『유러머니』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최근에는 조사대상국 100여개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

5) 북한은 179개국 중 175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위험도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것을 남북대치상황이라는 정치적 위험 때문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정치적 불안정성의 순위는 22위로서 국가별 위험도 24위보다 높다.

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IMD나 WEF보고서의 대상국가가 주로 선진 국이나 신개발국가(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NICS)임을 감안한 다면 이들 보고서가 실제 세계 각국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하여도 우리나라의 순위는 20~30위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쟁력이 여타국가에 비하여 크게 낙후된 것으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국제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경쟁 력은 매년 그 순위가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연구주관 기관의 경쟁력 개념에 따라 경쟁력지수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성격과 가중치가 다르다.

〈표 3〉 국제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의 연도별 변화

	1985	1990	1992	1993	1994	1995	1996
WEF						-	20
IMD		-	29	28	32	26	27
Euromoney			-	29	27	26	24
Economic Freedom	21	29	-	12	12	12	-

주: WEF보고서는 1996년에 처음 발간됨.
자료: 〈표 1〉과 동일함.

2. 국가경쟁력 측정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주관 기관의 경쟁력 개념 또는 연구 목적에 따라 경쟁 력지수 작성에 사용되는 기초자료의 성격과 각종 요인에 대한 가중치가 다르 다. 본절에서는 경쟁력지수의 경제적 의미와 신뢰성 평가에 앞서서 IMD와 WEF의 경쟁력지표 작성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이들 지표의 객관성을 서술적 으로 검토한다.

가. IMD 지수

IMD가 작성하는 『세계경제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의하면 경쟁력이란 단순히 국내총생산 또는 생산성을 의미하 지 않고 당해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 등의 환경적 요인이 기업활동에 일

IMD는 국가경쟁력을 국부배양력으로 정의하면서도 국내경제 규모를 평가요인으로 채택하여 논리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 도움 또는 방해가 되는지에 달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쟁력이란 한 국가가 자원과 생산공정, 국제교역상의 매력, 적극성, 세계화 그리고 국내경제 관리와 모든 요인들의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부를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⁶⁾.

WEF와는 달리 IMD의 경쟁력 개념은 국부를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IMD에서는 국내경제규모, 즉 국내총생산 또는 그 증가율 등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8개 대요인(factor) 중 하나로 간주되어 경쟁력지수 평가기준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경쟁력을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제반 사회·경제구조로 정의할 경우 피설명변수가 설명변수로 채택되는 논리적 모순점을 갖고 있다.

1996년 IMD 기초자료(소요인, criterion)의 구성을 살펴보면 3,162명에 달하는 국제경영인으로부터 취득한 72개의 설문답변이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152개 통계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다시 8개 대요인으로 구별되는데 이들 대요인과 소요인의 일부 내역이 <표 4>에 나타나 있다.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득가능한 자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인상이 강하다. 한 예로 국제화지수를 작성함에 있어서 무역수지, 국제수지, 수·출입 등의 절대액과 국내총생산 대비 점유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더욱 심한 경우는 국내경제라는 대요인을 추정함에 있어서 미국 달러화 기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GDP 그리고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의 GDP와 1인당 GDP, 국민총생산(GNP)을 제각기 따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규모라는 동일한 변수를 몇 번씩 반복하여 포함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경제규모가 중요하다면 이에 대한 가중치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다. 이 밖에도 고려된 기초자료 중에 에이즈 감염자수나 노벨상 수상자수 그리고 광고비용 따위가 국가경쟁력과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성격의 기초자료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IMD자료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IMD는 상기의 기초자료를 표준편차방식(standard deviation method)으

6)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6, 1996, p.42.

로 1에서 -1로 표준화함으로써 변수의 크기에 따라 경쟁력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변화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설문자료와 통계자료의 상대적 신빙성을 감안하여 통계자료의 중요도가 전체자료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별 통계자료는 일률적으로 그 가중치가 한 단위가 되도록 하였다.

경쟁력 종합지수와 상기의 8개 부문지수(대요인지수)의 고저는 첫째, 각종

IMD 방식의 문제점은 각종 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일률적으로 고정하고 고려된 변수의 수효에 따라 경쟁력을 추정한다는 데 있다.

〈표 4〉 IMD 경쟁력지수 결정요인

국제화 (32)	국제수지, 환율안정성, 수출(입)액과 국내총생산 대비비율, 관광수입, 산업보호도, 외국인 투자규제, 국가 이미지
정부 (30)	부채액, 재정수지, 정부소비, 각종 세율, 물가통제, 정책탄력성, 투명성, 조달계약 개방도, 독점금지정책, 부패도, 사법제도
금융 (17)	금리, 국가신용도, 주식시장, 자본시장, 내부거래, 중앙은행 금융규제
사회간접 자본(26)	에너지소비, 원자재자립도, 통신투자율, 1인당 컴퓨터수, 전기료, 도로, 상수도율, 그린하우스지수, 유통구조, 도시화
기술개발 (17)	연구개발비, 노벨상 수상자, 엔지니어수, 지적재산권, 기본연구·연구기술의 협력도
경영 (24)	제조업 부가가치, 임금, 기업규모, 노동쟁위, 제품품질, 신제품 개발속도, 기업의 대국민 이미지
노동·국민 (24)	인구, 수명, 실직률, 문맹비율, 여성노동참가율, 직업교육정도, AIDS, 노동, 알코올, 충성도에 대한 사회적 평가, 소득분포
국내경제 (25)	각종 국내총생산액·국민총생산액과 그 증가율, 투자액, 저축률, 물가상승률, 아파트임대료, 구조조정의 필요성, 광고비용

주: () 안의 수치는 각종 대요인지수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들의 총계를 의미함.

자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6, 1996.

대요인에 고려된 소요인의 전체 수효와 둘째, 설문자료와 통계자료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이 작성된 경쟁력지수는 통계자료의 취득여부, 고려된 기초자료의 숫자에 의하여 쉽게 변화되는 단점이 있다⁷⁾.

IMD는 모든 통계자료에 대하여 동일한 비중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성장

7) 따라서 IMD 지수에서는 사용된 기초자료의 수효가 많은 국제화와 국민·노동부문의 가중치가 크고 금융과 기술개발부문의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작다.

WEF는 국가경쟁력을 국민 생활수준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국가경제의 잠재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론을 무시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대한 제반 연구결과로 볼 때 각종 경제·사회적 변수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된 변수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신발전이론은 인적·물적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이 경제발전에도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시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혹은 무역규모에 대한 평가는 아직 그 중요성이 일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지출성격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지출규모도 한계생산성 체감법칙(the law of decreasing marginal productivity)에 의하여 영향력이 단선적(monotonic)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각종 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일률적으로 고정하고 고려된 변수들의 수효, 즉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경쟁력을 추정하는 IMD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시정하면서 최근 연구결과를 참작하여 새로이 국가별 경쟁력지수를 개발한 WEF 지수를 살펴본다.⁸⁾

나. WEF 지수

WEF의 『국가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6)』는 IMD와 마찬가지로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이 세계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이고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이다. WEF는 국가경쟁력이란 “국민 생활수준 특히 1인당 GDP를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국가경제의 잠재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5~10년간의 성장잠재력을 추정한다⁹⁾”라고 하여 경쟁력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력 개념은 신발전이론을 반영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발전이론, 특히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 의하면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아래의 식 (1)로 표시될 수 있다.

$$r = f(Y, Y^*) \quad (1)$$

식 (1)에 따르면 현재의 1인당 국민소득(Y)이 낮을수록 그리고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의 국민소득(Y*)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r)도 높다. 소득

8) 물론 여기서도 작성자의 주관이 개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실증적 연구결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9) Jeffrey D. Sachs, "Why Competitiveness Counts,"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6*, 1996, p. 9.

수준이 경제성장률과 부(負)의 상관관계에 있는 이유는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 체감법칙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시간이 흐르면 일정수준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진보 또는 인적자본의 개발 등 효율성의 증진이 필요하다. 잠재적 국민소득수준 Y^* 는 이러한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 출산율 감소, 기술진보, 제도개선과 같은 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WEF의 경쟁력지수는 중·단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기의 제 요인들을 하나의 수치로 표시하려고 한 것이다.

경쟁력지수를 개발함에 있어서 첫째로 필요한 작업은 지수에 포함될 성장요인을 결정하고 이들 요인을 자료화하는 것이다. WEF는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55개의 각종 국제통계자료와 설문자료를 이용한다. 이 중 사법구조의 우수성처럼 통계화되지는 않았지만 경쟁력평가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인은 약 2천여명에 달하는 경영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치화하였다. 경쟁력을 결정하는 대요인을 설정함에 있어서 WEF는 IMD와 달리 국내 경제 부문을 제외하고 노동·국민부문을 노동과 사회제도 부문으로 나누어 법적·제도적 사회기반구조(social infrastructure)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하나의 독립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두번째 작업은 습득된 자료를 8개의 대요인으로 통합하고 이들 대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선정하여 종합지수로 압축하는 과정이다. 이 작업은 성장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기초자료를 IMD와 마찬가지로 표준편차방식에 적용하여 평균치를 0, 분포는 -1~1까지로 표준화한다. 각 기초자료(소요인)의 비중은 동일하나 IMD와는 달리 자료가 다양하더라도 자료의 성격이 같을 경우 이들을 평균화하였다. 즉 무역자유화에 대한 자료가 5개 있고 금융자유화에 대한 자료는 1개만 존재할 경우, 무역자유화 수치들을 일단 평균한 뒤 이를 금융자유화 수치와 함께 평균한다. 이는 물론 자료의 가용성이 지수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IMD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계자료와 설문자료에 대한 처리는 경쟁력 결정요인의 성격에 따라 그 중요성을 달리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들 자료를 가중평균하되 개방도·정부·금융·노동부문에서는 양적 자료가 신빙성이 있으므로 통계자료의 가중치를 4분의 3, 설문자료를 4분의 1로 하고, 사회간접자본과 기술은 그 반대로 하였

WEF의 경쟁력지수는 중·단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요인들을 하나의 수치로 표시하려고 한 것이다.

WEF의 경쟁력지수는 경제발전이론과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IMD와 비교할 때 좀 더 경제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개발되었다고 평가된다.

다. 이 밖에 경영력·사회조직은 완전히 설문조사에 의존하였다. 추정된 대요인을 종합지수로 통합함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방도·정부·금융·노동부문의 가중치는 6분의 1, 사회간접자본·기술 부문은 9분의 1, 사회조직·경영부문은 18분의 1로 하여 이들 성장요인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차별화하였다.

WEF의 경쟁력지수는 경제발전이론과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IMD에 비하여 좀 더 경제학적인 접근방식으로 개발되었다고 평가된다. 물론 아직도 이러한 지수작성에 있어서 판단의 자의성이 개재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론의 불완전성, 가중치의 부정확성,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등에 의하여 경쟁력 추정치의 편기(bias)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예로서 사회간접자본·경영방식·기술은 아직 회귀분석상 그 중요성에 대하여 어떤 판정이 내려져 있지 않으며 정부규모도 경제성장에 비선적인(nonlinear)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이 단순한 비판에 불과하지 않으려면 지수의 신뢰성이 실제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은 경쟁력지수가 얼마나 경제성장을 잘 설명 또는 예측할 수 있는가를 실증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소개하기 앞서서 우선 국제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부문별 경쟁력지수를 살펴보고 본고의 주된 관심인 정부운영의 평가를 검토한다.

3.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가. 부문별 평가

각종 국제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경쟁력의 종합순위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부문별 순위가 <표 6>~<표 9>에 나타나 있다. 경쟁력 추정에 있어서 가장 경제학적 접근방식을 취한 WEF는 우리나라를 조사대상 국가 49개국 중 20위로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노동(7위)과 정부부문(9위)이 우수한 반면에 개방도(41위)나 사회제도(civil institution: 34위)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표 6〉 WEF: 종합순위와 부문별 경쟁력 결정요인 순위(1996)

	경쟁력 순위	개방도	정부	금융	사회간접자본	기술 개발	경영	노동	사회 제도
한국	20	41	9	14	31	20	22	7	34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6*, 1996.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있어 WEF는 개방도와 사회제도, IMD는 금융과 사회간접자본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IMD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1990년대에 들어와 조사대상국 46개국 중 26위 ~ 38위의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IMD도 WEF와 마찬가지로 국제화(43위)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뒤쳐진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어서 금융(40위)과 사회간접자본(34위)이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지적되었다.

〈표 7〉 IMD: 종합순위와 부문별 경쟁력 결정요인 순위(1992~1996)

	경쟁력 순위	국제화	정부	금융	사회간접자본	기술 개발	경영	국민·노동	국내 경제
1992	29	44	25	45	38	25	29	23	14
1993	38	43	23	44	45	24	29	23	9
1994	32	44	35	42	36	24	37	23	9
1995	26	40	18	37	35	24	27	21	7
1996	27	43	33	40	34	25	28	21	4

자료: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6*, 1996.

연도별 추세로 보면 정부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1992년 이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내경제, 국민·노동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경쟁력은 향상되고 있으나 국제화, 기술개발 그리고 경영은 담보상태에 있다. 1995년에 비하여 1996년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는 국제화·정부·금융부문의 순위가 하락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정부부문은 18위에서 33위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자유지수를 나타내는 〈표 8〉을 살펴보면 1990년에 물가정책과 정부

국제보고서에 나타난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국제화에서의
 낙후성을 지적받고 있다.

개입의 악화로 29위를 차지한 경우를 예외로 하면 조사대상국 58개국¹⁰⁾에서의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1993~1995년에는 12위로 상위권에 진입하게 되었다. 특히 화폐·물가정책은 1990년 이후 상당히 개선되었고 정부개입도도 미약하게나마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¹¹⁾.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화는 여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Economic Freedom에서도 향상이 필요한 부문으로 지적되었고 정부운영은 최근 10년간 경제적 자유도를 많이 제한하는 부문으로 나타났다.

〈표 8〉 Economic Freedom: 종합순위와 부문별 자유도 순위(각 연도)

	경쟁력	국제화	화폐 및 물가	정부운영	정부개입
1975	28	25	52	20	25
1980	29	34	47	14	31
1985	21	26	38	6	17
1990	29	26	48	15	27
1993~95	12	27	21	20	22

자료: James Gwartney and Others,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75~1995*, The Fraser Institute, 1996.

10) 조사대상국은 원래 102개국인데 1993년 이전에는 58개국에 대해서만 부문별 평가자료가 존재하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쟁력순위를 재평가하였다. 1993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조사대상국 수에 상관없이 12위를 차지한다.

11) 정부개입도는 보조금과 이천지출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 최고한계세율 그리고 병역의무의 유무로 추정되었다.

국제보고서에 나타난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국제화에서의 낙후성을 지적받고 있다. 비록 무역규모와 같은 개방도의 양적 규모는 우수하게 평가되었지만 설문조사를 통한 국제화와 시장개방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고의 주된 관심인 정부부문은 IMD와 Economic Freedom이 저평가한 반면 WEF는 우리나라 정부운영의 우수성을 치하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유발된 원인, 즉 정부부문 경쟁력 결정요인의 요인별 순위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정부부문의 평가

〈표 9〉~〈표 11〉에는 정부부문의 요인별 순위를 나타나 있다. WEF는 우리나라 정부운영을 9위로 평가하였다. 반면 IMD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부문 순

위가 18위(1995년)에서 33위(1996년)로 급락하여 IMD와 WEF간의 정부 효율성에 대한 평가기준의 상이성이 돋보인다.

〈표 9〉 WEF: 정부부문 경쟁력 결정요인과 그 순위(1996)

	종합순위	정부규모	재정정책	조세정책	정부개입도	관료주의
한국	9	8	7	8	42	29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6*, 1996.

우리나라의 정부운영에 대해, WEF와 IMD 모두 재정정책과 정부지출규모는 우수하고 정부개입과 관료주의 측면은 열악하다고 평가한다.

두 기관이 우리나라 정부운영에서 동의하는 부문은 재정정책과 정부지출 규모로서 이 부문은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IMD는 국채부문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간주하였고 WEF는 조세정책을 좋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부개입과 관료주의(투명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두 기관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정부개입도는 평가대상국 가운데 하위 권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IMD는 우리나라 정부간섭이 46개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10〉 IMD: 정부부문 경쟁력 결정요인과 그 순위(1992~1996)

	정부부문 종합순위	국채	정부지출	정부의 경제개입도	정책효율성 과 투명성	재정정책	사회·정치 적 안정성
1992	25	13	14	42	39	9	28
1993	23	9	13	41	39	7	28
1994	35	8	12	46	41	8	27
1995	18	8	14	42	36	9	26
1996	33	7	13	46	38	9	31

자료: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6*, 1996.

이렇듯 WEF와 IMD가 우리나라 정부의 효율성에 있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질적 개선이다. 즉 양적인 측면에 비하여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 또는 관료주의 및 정책투명성은 아직 우리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하여

우리나라 정부운영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각 기관별로 통계와 설문자료에 부과한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있다는 것이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적 자유지수에서도 정부지출(16위)보다는 물가통제(40위)와 금리규제(35위)가 낙후된 부문으로 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국제보고서에서 동일하게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운영의 문제점은 정부규제로서 규제완화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급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표 11> Economic Freedom: 정부부문과 평가요인의 자유도 순위

	정부부문 종합지수	정부지출	공기업	물가통제	기업진출	법체계	금리정책
1975	20	13	18	-	-	-	20
1980	14	16	16	-	-	-	34
1985	6	13	17	-	-	-	11
1990	15	13	16	33	-	-	11
1993~1995	20	16	18	40	26	16	35

자료: James Gwartney and Others,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75~1995*, The Fraser Institute, 1996.

다. 정부부문의 평가기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기관이 우리나라 정부운영을 보는 시각은 상당히 유사하다. 즉 양적 측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그러나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기관별로 차이가 많이 존재하는데 이는 IMD가 사회·정치적 안정성 부문에서 우리나라를 낮게 평가하였고 또 정부규제의 폐쇄성이 IMD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통계와 설문자료에 부과된 가중치의 차이에 있다. 즉 WEF의 경우 통계자료가 존재하는 정부규모 등에 대한 비중을 설문자료에 비하여 3배로 가중하고 있다. 반면 IMD는 모든 자료에 동일한 비중을 부여함으로써 두 기관 사이에 평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교적 우월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양적 정부운영이 WEF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부문이 전체적으로 WEF에서 양호하게 인식된 것이다. 따라서 만약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가 취득된 관료주의

등이 경제성장에 정부지출과 유사한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IMD가 평가한 정부경쟁력이 WEF에 비하여 진실에 근접한 지수라고 할 수 있다.

WEF가 평가한 우리나라 정부운영의 내역은 각종 요인별로 <표 12>에 그 순위가 나타나 있다. 정부지출 외에 재정수지와 각종 조세의 (한계)세율은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나 투자나 근로유인정책은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관료주의와 정부개입은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데 이 가운데 물가통제와 투자간섭 등 정부개입이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12>에서 특기할 점은 강력한 물가통제(46위)에도 불구하고 1995년 물가인상률이 4.47%로 평가대상국 중 24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과 열악한 투자유인책(24위), 자본이득세(27위) 그리고 투자정책(44위)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국내총투자가 국내총생산의 36.6%에 달하여 대상국가 중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평가는 강력한, 그러나 과도된 정부의 지로 인하여 우리나라 시장의 가격구조가 왜곡되고 있고 민간투자는 정부시책에 따라 지금보다 더 증가할 여유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 정부운영의 장단점도 WEF의 평가와 유사한데 특히 정부지출(9위), 재정수지(11위) 등 예산정책과 조세정책에서 좋은 평가를

물가통제와 투자간섭 등을 통한 정부개입은 우리나라 시장의 가격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

<표 12> 우리나라 정부운영의 평가기준과 순위(WEF)

정부규모(8)	일반정부지출(7) ¹⁾ , 공기업 생산규모(19) ¹⁾
재정정책(7)	공공저축(5) ¹⁾ , 정부연금 혜택규모(9) ¹⁾ , 중앙정부 재정수지(7) ¹⁾ , 물가인상률(24)
재정정책(8)	평균 법인세율(15), 일반노동자의 한계소득세율(9), 부가가치세율(10), 고용인과 피고용인 봉급세율(9), 법인세에서의 투자유인(24) ²⁾ , 자본이득세규정(27) ²⁾ , 감가상각규정(13) ²⁾ , 개인세에서의 근로유인(22) ²⁾
정부개입도(42)	경제촉진정책(36) ²⁾ , 정부간섭(37) ²⁾ , 민간투자정책(44) ²⁾ , 물가통제(46) ²⁾ , 보조금정책의 효율성(17) ²⁾ , 재정정책의 균등성(36)
관료주의(29)	비정상적 행정관행(31) ²⁾ , 정책의 투명성(24) ²⁾ , 관료주의(32) ²⁾

주: () 안의 수치는 순위를 의미하며 봉급세율은 payroll tax rate임.

1)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의미함.

2) 설문자료에 기초한 순위임.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6*, 1996.

WEF는 자료의 가용성이 지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중치를 달리하는 등 경쟁력지수의 작성방식을 개선하였다.

내리고, 기업환경(46위), 물가통제(45위), 노동시장의 탄력성(41위)과 독과점정책(40위)에서 취약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Ⅲ. 국가경쟁력: 평가와 교훈

1. 경쟁력지수의 신뢰성 검증

가. 경쟁력지수의 문제점

앞에서 IMD와 WEF 경쟁력지수의 개념과 작성방식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IMD의 경우 국가경쟁력이 '국부를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도 평가요인에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등을 포함함으로써 논리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국내총생산 등 동일한 요인을 반복하여 포함하고 있고 이들 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일률적으로 균등화함으로써 자료의 존재여부에 따라 경쟁력지수의 크기가 결정되는 등 자의적인 지수작성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WEF 지수는 경제성장론에 바탕을 둔 지수로서 IMD에 비하면 그 작성방식이 진일보한 것이다. 특히 동일한 성격의 자료가 많이 존재할 경우 이를 평균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자료의 가용성이 지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는 등 경쟁력지수의 작성방식이 많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론과 자료의 불완전성, 가중치의 부정확성과 경쟁력을 하나의 수치로 압축함으로써 유발되는 문제점들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경쟁력지수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기초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상당한 작업을 요하고 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95년 경쟁력지수가 1990~1995년까지의 1인당 국내총생산 실질 평균성장률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토한다.

나. 경쟁력지수의 신뢰성

제Ⅱ장에서 내생적 성장이론을 소개하면서 경쟁력지수가 잠재적 소득수준을 대표할 수 있다고 논한 바 있다. 식 (1)을 상기하여 보면 경제성장률은 기

준연도의 1인당 국내총생산(Y^i_t)과 잠재적 균제상태에서의 국내총생산(Y^*i)으로 결정된다. 식 (1)을 추정식으로 변형하면 아래의 식과 같다.

$$r_i = a + b_1 Y^i_t - b_2 Y^*i + e_i \quad (2)$$

식 (2)를 일반 최소자승식으로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13>인데 추정식에서 종속변수 r_i 은 국가 i 의 1990~1995년 1인당 실질평균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소득수준은 1990년 1인당 국내총생산을 사용하였다. 추정모형에서 잠재적 국내총생산을 대리하는 변수로 각종 경쟁력지수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경쟁력지수는 IMD를 제외하고는 지수값으로서 이 수치가 클수록 경쟁력이 높은 국가이다. 반면에 IMD 모형에서의 경쟁력지수는 그 순위로서 지수값이 작을수록 경쟁력이 강한 나라이다.

추정결과는 기존 연구와 같이 1인당 국내총생산이 낮을수록 경제성장은 빠르게 이루어진다. 국제보고서상의 경쟁력지수 모두가 설명력을 갖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로 경쟁력이 높은 나라일수록(IMD에서는 경쟁력 순위가 올라갈수록) 성장률도 높다. 이들 두 변수만으로도 대략 국가간 성장률 변동률의

경쟁력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정모형에서 경쟁력 지수와 1인당 GDP를 설명변수로 할 때 경제성장률과 경쟁력 지수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경제성장률과 경쟁력지수의 상관관계 추정

	WEF	IMD	EF
상수	3.93 (5.71)	10.36 (5.44)	-4.15 (-2.88)
경쟁력지수	2.46 (5.09)	-0.22 (-4.53)	1.24 (4.86)
1인당 GDP(1990)	-0.002 (-3.86)	-0.0003 (-4.11)	-0.0001 (-3.94)
R^2	0.37	0.33	0.40
표본수	49	46	46

주: 1. () 안의 수치는 t값이며 EF는 Economic Freedom을 의미함.
2. WEF와 EF의 경쟁력지수는 지수수치이며 이외 IMD의 경쟁력지수는 순위를 의미함.

5분의 2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 다만 IMD의 경우 비록 경쟁력지수 개발시 종속변수인 경제성장률을 한 요인으로 포함하였지만 순위도를 사용한 때문인

경쟁력지수, 1인당 GDP와 다른 중요 변수를 동시에 회귀분석에 포함할 경우 경쟁력 지수는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 설명력이 다른 두 지수에 비하여 약간 떨어진다¹²⁾.

경쟁력지수와 1인당 국내총생산만을 설명변수로 할 때 경쟁력지수가 상당히 유의한데 이들 지수와 다른 중요변수를 동시에 회귀분석에 포함할 경우 경쟁력지수가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통계적으로 이들 지수가 계속 유의하다면 경쟁력지수가 독립적으로 의미가 있는(robust) 지수라고 할 수 있겠다. <표 14>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연구결과들이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변수 중에서 1995년 물가상승률, 정부재정, 민간투자비율(국내총생산 대비)을 상기의 회귀분석에 첨가한 결과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력지수는 IMD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력을 상실하는데 정부재정규모나 민간투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1인당 국내총생산도 그 영향력이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 사용된 회귀분석모형이 적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설명변수의 값이 1995년 수치이므로 경쟁력지수가 다른 변수와 동시시간적인 상관관계(contemporaneous correlation)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표 14>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경쟁력지수가 그다지 '안정적' 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IMD 지수도 상기의 추정식에서는 중요하게 나타나지만 다른 중요변수를 이 모형에 첨가한다면 그 유의성을 잃게 되어 이 또한 그

<표 14> 경제성장률과 경쟁력지수, 기타변수와의 상관관계 추정

	WEF	IMD	EF
상수	4.31(1.84)	4.96(2.11)	0.56(0.15)
경쟁력지수	-0.05(-1.39)	-0.07(-1.79)	0.26(0.59)
물가상승률	-0.02(-1.28)	-0.03(-1.62)	-0.02(-1.24)
정부소비/GDP	-0.06(-1.82)	-0.06(-2.03)	-0.06(-1.71)
총투자/GDP	0.09(1.63)	0.10(1.92)	0.13(2.38)
1인당GDP(1990)	-0.00008(-1.18)	-0.0001(-1.54)	-0.00003(-0.50)
R ²	0.54	0.56	0.52
표본수	43	43	43

12) 경쟁력지수와 성장률이 동시시간적이므로 본 추정식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상관관계를 추정함을 밝혀둔다.

주: 1. IMD모형에서 경쟁력지수는 순위이며 여타모형은 지수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2*, 1994: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6*, 1996 and Others.

렇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경쟁력지수의 종합평가

방법론상에 있어서 <표 13>~<표 14>에서 사용된 변수가 동시공간적이어서 각종 지수의 설명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1990년과 1991년 자료를 이용한 1992년 IMD 경쟁력 순위와 1990년 투자비율의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아도 본고의 결론이 변하지 않는다. 즉 <표 15>의 추정식은 1992년 경쟁력순위와 투자비율(GDP 대비)로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 표에 따르면 경쟁력순위와 투자율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1990년 1인당 국내총생산과 함께 이들이 국가별 성장률 변화의 40%를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의 두 추정식은 경쟁력지수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비율은 경쟁력지수 못지않은 설명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하여 투자를 증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결론이 자연스럽게 정책시사점으로서 유도될 수 있다. 특히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할 경우 각종 국가정책의 경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할 경우 각종 국가정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예측할 수 있다.

<표 15> 경제성장률에 관한 경쟁력순위, 투자비율의 설명력 비교

상수	7.75(5.82)	-2.90(-2.02)
경쟁력순위(1992)	-0.14(-4.10)	-
총투자/GDP	-	0.22(4.28)
1인당GDP	-0.0002(-4.45)	-0.0001(-1.50)
R ²	0.40	0.41
표본수	36	36

주: 경쟁력순위는 IMD의 1992년 순위이며, () 안의 수치는 t값을 의미함.

자료: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2, 1992 and Others*

중을 비교할 수 있고 각각의 정책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경쟁력지수를 강조할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경쟁력지수는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나 경제성장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학문적 가치는 부족하다.

수행해야 하는지 그 정책적 시사점이 모호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한정된 자원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국가정책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이란 정책의 순위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국가경쟁력이 정치적 구호로서 모든 생산활동에 대하여 효율·비효율의 구분이 없이 무조건적인 생산성증대를 요구하는 등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경제학자로서 이의 남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무역이 비교우위에 의한 것이지 절대우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국가정책이란 선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은 국가경쟁력을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비효율적인 산업은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경쟁력지수가 갖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의 모호성이야말로 그 태생의 한계로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경쟁력지수가 국가경쟁력을 하나의 수치로 표시한다는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나 경제성장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학문적 가치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2. 우리나라 정부운영과 국가경쟁력

가. 행정운영에 관한 국제적 평가

전술한 바와 같이 각종 국가경쟁력지수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각종 국제 보고서들이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관료주의와 불투명한 행정관행 등 우리나라의 과다한 행정규제는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16>에 나타나 있듯이 IMD와 WEF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운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관료주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실증적 분석결과는 차후에 제시하도록 하고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경제적 효과를 서술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표 16〉 우리나라 행정운영의 문제점 평가내역

IMD	WEF
정책투명성(36), 관료주의(33), 물가통제(45), 법집행의 공정성(34), 정치제도의 후진성(41), 행정의 중앙집중도(37), 경제정책의 유연성(33), 비정상적 행정관행(26)	정부간섭(37), 물가통제(46), 비정상적 행정관행(31), 정책투명성(24), 관료주의(32)

정부규제나 간섭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통하여
경제주체의 성장욕구를
저하시키고,
지대추구의 동기를
부여한다.

주: 설문자료에 기초한 순위임.

자료: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6*.
1996: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6*, 1996.

나. 정부운영과 국가경쟁력

각종 사회·경제제도가 미비하여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없는 저개발국가에는 필연적으로 자의적인 정부규제 또는 관료주의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저개발국가에서는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데 있어서 비록 비효율적이지만 정부가 시장의 가격조정기능을 대체해야 할 경우가 존재한다. 문제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각종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관료주의는 성장에 역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무역장벽이 급속하게 철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생산요소들이 경쟁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에 의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하고 가격조정기능을 통하여 효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관료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관료의 자의성이 정책에 개제될 경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완전한 시장체제하에서는 가격이 균형상태에 있으므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가 발생할 수 없으나 정부규제나 간섭이 불완전한 시장을 형성할 때 지대와 비리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규제와 행정의 불투명성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관료주의와 비리가 상호작용하여 이들이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관료주의는 부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규제나 간섭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통하여 경제주체의 성장욕구를 저하시키고 경제주체에게 지대추구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규모의 팽창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료주의를
통한 음성적이고도
무분별한 정부간섭을
통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물론 관료주의가 실제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고 단언하려면 실증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추후에 관료주의가 부정부패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논문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정부가 국가경제에 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정책수단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전술한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운영에 있어서 외적 형태는 우수하나 행정의 자의성이 심각한 것으로 각종 국제보고서에서 일관되게 평가되었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깊은 나라일수록 규제 폭이 좁은 반면 예산규모는 큰 편이다. 정부규제나 행정지침은 신속하고 확실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의성이 개제될 수 있고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조정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국회나 여론의 감시를 받는 예산과 조세정책은 그만큼 부패의 소지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진국가들이 시장기능을 보존하는 간접적 정책수단을 선호하는 까닭과 우리 정부운영의 현실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확실한 것은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정부예산 이외에 관료주의를 통한 정부의 경제개입까지 감안하여야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같은 정부규모의 팽창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료주의를 통한 음성적이고도 무분별한 정부간섭을 통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정부개혁에서 시급한 과제는 무조건적인 예산감소나 정부인원 감축이 아니다. 정부가 민간경제에 간여할 필요가 있는 부문은 행정규제보다는 비교적 객관성을 떨 수 있는 재정이나 조세정책으로 양성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와 정부규제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현재 진행중인 개혁이 자의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정부개혁과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려는 진지한 자세가 제시될 때만 개혁이 올바르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본고는 각종 국제보고서상의 경쟁력지수를 제시하고 그 작성방법을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국제적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쟁력은 과거에 비하여 계속 개선되고 있고 노동·기술부문과 정부운영에 있어서의 양적인 면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외개방도와 관료주의 등 정부부문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경쟁력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들 지수와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쟁력지수가 성장률의 일정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면 설명력이 급속하게 떨어져서 경쟁력지수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쟁력지수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가경쟁력이 취약하다 하더라도 여기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적 시사점을 유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환언하면 한정된 자원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국가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종 정책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이란 나열된 경제·사회지표를 불완전한 기준하에 하나의 수치로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순위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는 태생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국가경쟁력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인용되어 우리나라 경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데 혼동을 야기한다는 점에서도 이의 남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무역이 비교우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는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을 구별하여 제한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쟁력지수가 국가경쟁력을 하나의 수치로 표시한다는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나 경제성장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실용적 가치는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국제보고서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운영의 취약점은 관료주의와 비정상적인 행정관행 등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이다. 비록 우리 정부가 재정이나 조세정책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투명한 정부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부문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상당한 결

국가경쟁력이란
경제·사회지표를
불완전한 기준하에
하나의 수치로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순위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진행중인 우리나라 정부생산성 제고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투명한 정부운영이다.

림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는 정부규제나 관료주의가 정부생산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 시점에서 관료주의가 역기능을 유발할 수 있는 데 비하여 시장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은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정부규제는 부정부패를 유발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진행중인 우리나라 정부생산성 제고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투명한 정부운영이다.

상기의 논의가 모든 정부개입을 무조건적으로 철폐하라는 주장은 물론 아니다. 정부개입이 꼭 필요한 부문에 있어서는 정부가 행정규제보다 예산과 조세 정책을 통하여 민간경제를 규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재정정책은 첫째, 국회와 여론의 감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정부관리의 자의성과 비리가 개제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둘째, 예산과 조세를 통한 정부개입은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조정기능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비용구조나 개방압력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운영의 유연성이다. 이제는 국가적 난관을 숙지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치·사회제도의 성숙함이 없이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첨예화되고 있는 무역경쟁 속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경쟁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을 굳이 정의하자면 노동법이나 한보사태와 같은 난제를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사회제도의 탄력성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담당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부정부패 척결이나 규제완화가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부정부패방지법을 도입하여 비리의 구조적인 먹이사슬을 과감히 제거하여야 한다. 확고한 정부의지를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을 때 깨끗한 정부운영에 대한 폭 넓은 공감대가 국민들 가운데 형성될 것이며 이러한 국민적 지지야말로 성공적인 정부개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KD**

최근 환율변동이 수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김 종 만/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원/달러 환율은 지난 해 6월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1달러당 870원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엔/달러 환율은 1995년 한때 1달러당 80엔 이하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상승하여 최근에는 124엔을 초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내생산품의 해외수출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제품을 비롯하여 식량 등의 수입의존도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변동할 경우 수출 및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품들은 많은 경우 해외시장에서 일본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다. 게다가 생산설비 등 자본재와 제품생산을 위한 중간재의 대일(對日)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일본 수출품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생산품의 해외수출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제품과 식량 등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변동할 경우 수출 및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외환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해 작년 6월부터 원/달러 환율이 점차 상승하게 되었다.

〈표 1〉 주요환율 변동추이

(기말기준)

	1985	1989	1993	1995	1996	1997.2.14
원/달러 환율	890.20	679.60	808.10	774.70	844.20	874.80
엔/달러 환율	200.50	143.50	111.85	102.83	115.85	124.40
마르크/달러 환율	2.4613	1.6978	1.7263	1.4335	1.5400	1.6848
대만달러/미달러 환율	39.850	26.17	26.626	27.270	27.491	27.508 ¹⁾

주: 1) 2월 10일.
 자료: IMF, IFS,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및 재정경제원 일일경제지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환율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나아가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상대적인 변동이 우리나라의 수출 및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비교해 보고 전체적인 영향의 크기를 파악해 보기로 하겠다.

II. 최근 환율변동의 원인 및 환율수준의 적정성 평가

1. 최근 원/달러 환율상승 원인

지난 해 6월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은 크게 국내요인과 해외요인의 두 가지로 판단된다. 먼저 국내요인은 지난 해 2/4분기부터 경상수지의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자본수지흑자를 통한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 점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해외자본의 유입이 증가하여 자본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수지는 매년 흑자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996년에는 경상수지적자가 약 237억달러로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자본수지가 약 17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 2〉 최근 우리나라 국제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¹⁾ 11월까지
경상수지	-87.3	-45.3	3.8	-45.3	-88.2	-237.2
무역수지 ¹⁾²⁾	-69.8	-21.5	18.6	-31.5	-47.5	-152.8
무역외수지 ³⁾	-17.5	23.8	-14.8	-13.8	-40.7	-84.4
자본수지	42.3	83.4	68.8	90.2	135.3	172.4
장기자본수지	41.9	72.3	89.0	58.6	79.0	118.1
단기자본수지	0.4	11.1	-20.3	31.6	56.3	54.2
오차 및 누락	7.6	10.8	-7.2	-16.7	-16.4	7.5
종합수지	-37.4	49.0	65.4	28.2	30.8	-57.3

주: 1) 잠정치. 2) 국제수지 기준임. 3) 이전수지 포함.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6년 11월호 및 한국은행 내부자료.

미국 달러화가 1995년 이후 엔화나 마르크화 등 주요통화에 대하여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원인이다.

종합수지는 약 5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외환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지난 해 6월부터 원/달러 환율이 점차 상승(원화가치 하락)하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하여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 반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은 해외차입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원화가치의 하락이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해외요인은 미국 달러화가 1995년 이후 엔화나 마르크화 등 주요통화에 대하여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다. 〈표 1〉에서 1995년 말 이후 금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엔/달러 환율은 약 21% 상승하였으며 마르크/달러 환율은 약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달러화가 주요 통화에 대하여 강세를 유지한 이유 중 하나는 1995년 3월에 발생한 멕시코 금융위기로 인하여 같은 해 달러화의 가치가 과도하게 하락한 데 대한 반작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2월 초 베를린에서
 개최된 G7회의에
 참석한 주요국의
 당국자들은 최근의
 달러화 강세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표 3〉 주요국 경제지표

		1993	1994	1995	1996		
					I	II	III
GDP 증가율 (%)	미국	2.2	3.5	2.0	2.0	4.7	2.1
	일본	0.1	0.5	0.8	12.7	-1.1	0.4
	독일	-1.2	2.9	1.9	-0.5	1.5	1.0
경상수지 (억달러)	미국	-999	-1,512	-1,592	-356	-402	-480
	일본	1,319	1,305	1,104	191	149	161
	독일	-156	-211	-174	-31	-34	-71
장기금리 (연율 %)	미국 ¹⁾	6.6	7.4	6.9	6.4	6.9	
	일본 ²⁾	3.5	4.9	2.6	3.2	3.3	
	독일 ³⁾	6.3	6.7	5.6	5.6	5.8	

주: 1)장기국채 수익률(기간평균). 2)장기 프라임레이트(기말). 3)장기 국채수익률(기간평균).
 자료: 한국은행, 『주간해외 해외경제』, 각 호.

또한 미국의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 대하여 일본과 독일의 경제는 불
 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달러화 강세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국내금리
 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본이 미국으로 유입되어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도 달러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금년 2월 초 베를린에서 개최된 G7회의에 참석한 주요국의 당국자
 들은 이와 같은 달러화 강세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주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에 합의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앞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등 공
 동보조를 취할 경우 달러화 강세추세는 진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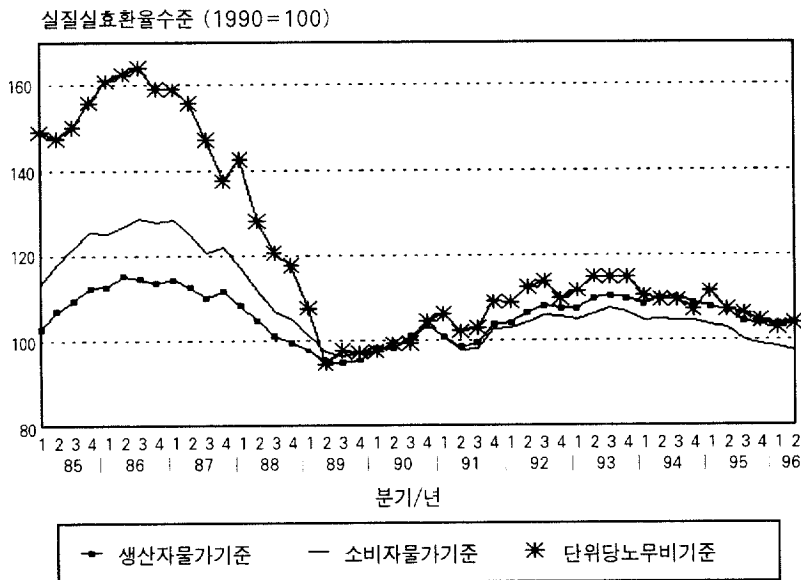
2. 환율수준의 적정성 평가

우리나라와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물가 및 제품단위당 노무비의 상대적인 변동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의 변동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원화의 가치는 1990년에 비하여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¹⁾. [그림 1]에서 1990년과 비교할 때 지난 해 2/4분기중 생산자물가기준 실질실효환율과 제품단위당 노무비기준 실질실효환율은 각각 약 4% 상승(원화 가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같은 분기의 소비자물가기준 실질실효환율은 1990년에 비하여 약 3% 하락(원화 가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원/달러 환율은 1996년 2/4분기(1달러당 평균 786.18원)에 비하여 약 11% 상승(원화 가치 하락)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원화의 가치는 1990년에 비하여 약 10% 내외 저평가된 수준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최근 원화의 가치는 1990년에 비하여 약 10% 내외 저평가된 수준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 실질실효환율 추이



1)[그림 1]에 표시된 실질실효환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 12개국이다. 실질실효환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각국 통화에 대하여 적용하는 가중치를 해당국에 대한 무역(수출+수입)비중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각 통화에 대한 비중은 해당국에 대한 수출의 비중만을 고려하였다. 또한 달러화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12개국 이외의 나머지 국가에 대한 수출의 비중은 미국에 합산하였다. 각 나라의 제품단위당 노무비지수는 명목임금지수를 노동생산성지수로 나누어서 산출하였다.

최근의 수출부진 및 경상수지의 악화는 원화 가치의 고평가가 주된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산출한 환율지표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고려하여 환율수준을 평가해 볼 수도 있다²⁾.

〈표 4〉에서 각 환율지수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1996년 2/4분기중 원화의 가치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던 1985년에 비하여서는 약 1%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원화의 가치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던 1993년에 비하여서는 약 2% 고평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³⁾.

그런데 1996년 2/4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평가한 최근 원화의 가치는 1985년에 비하여서는 10% 내외, 1993년에 비하여서는 8% 내외 저평가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종합할 때 최근 원화의 가치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고평가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최근의 수출부진 및 경상수지의 악화는 원화 가치의 고평가가 주된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환율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화로 표시된 수출가격의 변동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각 환율지수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가중치로 하여 환율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다. 〈표 4〉에서 각 환율지수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화로 표시된 수출가격의 변동률을 피실명 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각 환율지수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표시하는 계수추정치의 절대값이다.

3) 실제로 1985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약 2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1993년 경상수지는 약 3억 8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4〉 달러표시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1996년 2/4분기 환율수준 평가

(1985=100(1993=100))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가중치 (A)	환율지수 (B)	적수 (A×B)	환율수준 평가지수
원/달러 명목환율	0.3882	0.5103	90.4 (97.9)	46.1 (50.0)	103.4 (98.9)
명목실효환율	0.3725	0.4897	117.0 (100.0)	57.3 (49.0)	
원/달러 명목환율	0.4127	0.6168	90.4 (97.9)	55.7 (60.4)	85.0
단위노무비 실질실효환율	0.3564	0.3832	76.3 (91.3)	29.3 (35.0)	(95.4)
원/달러 명목환율	0.4833	0.6699	90.4 (97.9)	60.5 (65.6)	115.1
달러 제외 명목실효환율	0.2380	0.3301	165.4 (103.7)	54.6 (34.2)	
평			균		101.2 (98.0)

주: () 안의 숫자는 1993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평가할 경우임.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각 환율지수의 변동이 달러화로 표시된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절대값임.

Ⅲ. 최근 환율변동이 수출 및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1.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변동이 수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중간재 등의 국내가격이 상승하고 아울러 전반적인 물가도 상승하게 된다.

실증분석의 결과 원/달러 환율이 변동할 경우 달러화로 표시된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수출가격이 변동할 경우 장기적으로 수출물량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의 수출가격(달러표시)을 결정하는 각 요소들의 변동으로 인한 수출가격의 변동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서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할 경우 수출가격은 같은 분기와 차후 1분기에 걸쳐서 약 0.78% 하락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각 요소 1% 상승이 달러표시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요소변동후 경과분기					영향의 합계
	0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수출물량 1% 증가		+0.020	+0.081	+0.064	+0.016	+0.181
수입가격 1% 상승	+0.356					+0.356
생산자물가 1% 상승	+0.115					+0.115
단위당 노무비 1% 상승	+0.157					+0.157
이자율 1% 상승	+0.117					+0.117
원/달러 환율 1% 상승	-0.598	-0.180				-0.778
엔/달러 환율 1% 상승		-0.106				-0.106

자료: 김종만,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한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중간재 등의 국내가격이 상승하고 아울러 전반적인 물가도 상승하게 된다. 게다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명목임금도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의 상승효과는 생산자물가에 비하여 보다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제품생산을 위한 재료비 및 노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증분석의 결과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할 경우 수출품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가격은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이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표에서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할 경우 수입품의 국내가격은 같은 분기에 1%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표 6> 원/달러 환율 1% 상승 이후 원가요소 가격 및 수출가격 조정

(단위: %)

	환율변동 후 경과기간							
	0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년	3년	4년
수입품 국내가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생산자물가	+0.259	+0.422	+0.425	+0.433	+0.443	+0.454	+0.454	+0.454
소비자물가	+0.093	+0.231	+0.303	+0.357	+0.361	+0.372	+0.373	+0.373
제조업임금	+0.000	+0.029	+0.130	+0.246	+0.317	+0.373	+0.374	+0.374
달러표시 수출가격	-0.212	-0.369	-0.353	-0.333	-0.321	-0.311	-0.311	-0.311

4)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량이 세계전체의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량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달러화로 표시된 수입품의 국제가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입품은 대부분이 생산설비 등 자본재나 생산을 위한 중간재 및 원유 등 에너지 제품과 식량 등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품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입물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원/달러 환율과 수입품의 국내가격은 같은 비율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주: 환율 상승 이전과 비교할 때 각 변수 수준의 차이를 표시함.
 자료: 김종민,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p. 104 (표 III-5).

생산자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하는 것과 같은 분기에 약 0.26% 상승하고 1분기 후까지 약 0.42% 상승하게 되며, 이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장기적으로는 환율상승 이전에 비하여 약 0.45% 상승한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⁵⁾.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의 상승효과는 생산자물가에 비하여 보다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하는 것과 같은 분기에 약 0.09% 상승하고 1분기 후까지 약 0.23% 상승하며 1년(4분기) 후까지는 환율상승 이전에 비하여 약 0.36%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원/달러 환율 1%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의 장기적인 상승효과는 약 0.37%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5)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2분기 이후의 생산자물가 상승은 주로 임금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명목임금의 상승은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유발되기 때문에 보다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조업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한 1분기 후에 약 0.03% 상승하고 2분기 후까지는 약 0.13% 상승하게 되며 1년 후까지 약 0.32%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명목임금의 장기적인 상승폭은 소비자물가의 상승폭과 거의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달러화로 표시된 수출가격이 1% 하락할 경우 수출물량은 장기적으로 약 2.5%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하락효과와 원가요소의 상승을 통한 간접적인 상승효과를 합할 경우 수출가격은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하는 것과 같은 분기에 약 0.21% 하락하고 1분기 후에는 약 0.37% 하락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환율상승 후 2분기부터는 수출품 생산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점차 상향조정되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환율상승 이전에 비하여 약 0.31% 하락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달러화로 표시된 수출가격이 1% 하락할 경우 수출물량은 장기(3년)적으로 약 2.5%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물량의 증가는 수출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수출가격과 수출물량 변동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한 후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의 조정과정을 추정한 결과는 <표 7>에 정리되어 있다.

<표 7> 수출물량 및 수출금액 조정

(단위: %)

	환율변동 후 경과기간							
	0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년	3년	4년
달러표시 수출가격	-0.212	-0.367	-0.342	-0.304	-0.272	-0.216	-0.201	-0.207
수출물량	+0.080	+0.210	+0.316	+0.397	+0.455	+0.581	+0.593	+0.537
수출금액	-0.132	-0.158	-0.027	+0.090	+0.182	+0.363	+0.391	+0.329

주: 환율상승 이전과 비교할 때 수준의 차이를 표시함.
 자료: 김종만,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p. 106 <표 III-6>.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의 하락폭이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물량의 증가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

이 표에서 수출가격은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하는 것과 같은 분기에 약 0.21% 하락하고 1분기 후에는 약 0.37% 하락한 수준에 도달한 후 2분기 후부터는 점차 상향조정되어 장기적으로 환율상승 이전에 비하여 약 0.21% 하락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물량의 증가효과를 감안하였기 때문에 <표 6>과 비교하여 수출가격의 장기적인 하락폭이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수출물량은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하는 것과 같은 분기에 약 0.08% 증가하고 1년(4분기) 후까지 약 0.46% 증가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후에도 수출물량은 점차 증가하여 장기적으로는 환율상승 이전에 비하여 약 0.54% 증가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의 상대적인 변동을 감안할 경우 달러화로 표시된 수출금액은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하는 것과 같은 분기에 약 0.13% 감소하고 1분기 후에는 약 0.16% 감소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금액은 2분기 후까지도 환율상승 이전의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의 하락폭이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물량의 증가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J곡선효과(J curve effect)라고 한다.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금액의 증가효과가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은 3분기 후부터이며 이후 수출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장기적으로는 환율상승 이전에 비하여 약 0.33% 증가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8> 엔/달러 환율 1% 상승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수 출			수 입	
수출가격	수출물량	수출금액	수입가격	수입금액
-0.106	-0.101	-0.207	-0.159	-0.159

주: 1975년 1/4분기부터 1995년 2/4분기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우리나라 수출품은 많은 경우 해외시장에서 일본제품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달러화로 표시된 일본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가격도 하락하고 수출물량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⁶⁾. 또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가격이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수입가격에 미치는 하락효과도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⁷⁾.

엔/달러 환율 1% 상승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가격(달러 표시)의 하락효과는 약 0.11%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수출물량의 감소효과는 약 0.10%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달러화로 표시된 우리나라의 수출금액 약 0.21%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사실은 엔/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가격의 하락과 수출물량의 감소는 비교적 단기간(2분기 이내)에 일어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출금액의 감소효과도 비교적 단기간에 나타나게 된다. 또한 엔/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이 같은 방향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의 J곡선효과와 유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엔/달러 환율이 1% 상승할 경우 달러화로 표시된 우리나라의 수입가격은 약 0.16% 하락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 1996년 6월 이후 원/달러, 엔/달러 환율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은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수출입품의 가격과 수출물량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난 해 6월 이후 최근까지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변동의 영향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⁸⁾.

원/달러 환율은 1996년 6월 이후 최근(1997년 2월 14일)까지 약 7.9% 상승하였다. 이에 대하여 엔/달러 환율은 같은 기간에 약 13.7%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달러화로 표시된 우리나라 수출가격의 장기적인 하락효과는 약 1.6%인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또한 엔/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가격의 상승효과는 약 1.5%인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들 효과를 합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가격은 장기적으로 약 3.1% 하락하게 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물량의 장기적인 증가효과는 약 4.2%이

엔/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가격의 하락과 수출물량의 감소는 비교적 단기간에 일어난다.

6) 실증분석의 결과 엔/달러 환율이 1% 상승할 경우 달러화로 표시된 일본의 수출가격은 약 0.71% 내지 0.83% 하락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종만, 『일본 환율정책의 방향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1993, p. 132 (표 A-2) 참조.

7) 1995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입 중 약 24%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었다.

8) 1995년 3월에 발생한 멕시코 금융위기로 인하여 같은 해 중반 달러화의 가치가 이상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1996년 초까지의 엔/달러 환율 상승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환율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에서 1996년 2/4분기 원화의 가치는 크게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1996년 6월 이후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상대적인 변동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금액의 증가효과가 점차 실현될 경우 경상수지는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고 엔/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물량의 감소효과는 약 1.4% 인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종합할 때 우리나라 수출물량은 장기적으로 약 2.9%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수출가격의 하락 효과와 수출물량의 증가효과가 거의 상쇄되어 장기적으로 수출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1996년 6월 말 이후 원/달러, 엔/달러 환율변동으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 (단위: %)

	원/달러 환율 7.9% 상승효과	엔/달러 환율 13.7% 상승효과	합계
달러표시 수출가격	-1.64	-1.45	-3.09
수출물량	+4.24	-1.38	+2.86
달러표시 수출금액	+2.53	-2.81	-0.28
달러표시 수입가격	0.00	-2.18	-1.89
생산자물가	+3.59	-0.99	+2.60
소비자물가	+2.95	-0.82	+2.13

주: 1996년 6월 이후 금년 2월 14일까지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변동으로 인한 장기적인 효과를 표시함.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금액의 증가효과는 점진적으로 실현됨에 대하여 엔/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금액의 감소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게 된다. 특히 J곡선효과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이후 수출금액은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환율변동의 효과가 실현되는 기간의 차이 때문에 최근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상대적인 변동이 무역 및 경상수지를 단기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금액의 증가효과가 점차 실현될 경우 경상수지는 점차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나 엔/달러 환율의 상승이 모두 달러화로 표시된 우리나라 수출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수출의 수익성도 악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의 상승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상승효과는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자물가의 장기적인 상승효과는 약 3.6% 이고 엔/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국내 생산자물가의 하락효과는 약 1%인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물가의 장기적인 상승효과는 약 2.6% 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 최근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의 장기적인 상승효과는 약 2.1%인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의 상승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상승효과는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V. 종합평가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원화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고평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던 1985년이나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던 1993년과 비교하여 다소 저평가된 수준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수출부진 및 경상수지의 악화는 원화의 가치가 고평가되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해 6월 이후 최근까지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상승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금액을 장기적으로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금액의 증가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데 반하여 엔/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금액의 감소효과는 비교적 단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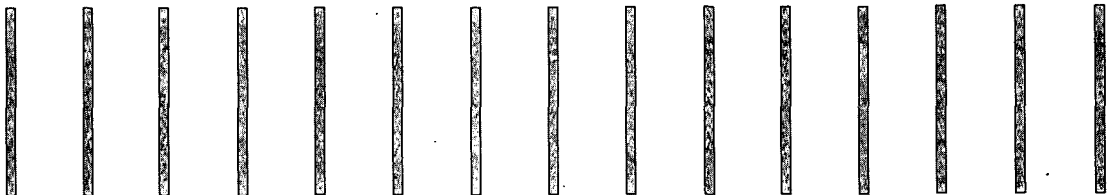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나 엔/달러 환율의 상승이 모두 우리나라 수출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역조건과 수출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이나 엔/달러 환율의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국내물가의 상승효과가 엔/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하락효과로 완전히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지난 해 6월 이후 최근까지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효과는 각각 약 2.6%와 2.1%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흐름

1. 1996년 국세실적(잠정)
2. 1997년 시행 중소기업 지원세제
3. 199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4. 91일물 단기국채 발행
5. 금융개혁의 추진실적과 주요과제
6.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1996년 국세실적(잠정)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에서 2월 19일에 발표한 「1996년 국세실적(잠정)」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1996년도 총국세수입은 64조 9,588억원으로 잠정집계됨.
 -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57조 136억원으로 예산(56조 6,110억원)보다 4,026억원이 초과되었고
 -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7조 9,452억원으로 4,660억원이 미달되어
 - 총국세로는 예산(65조 222억)보다 0.1%(- 634억원) 미달되었음.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세입증수분 2,218억원과 세출불용액 2,500억원을 합해 4,718억원임.
- 총국세수입이 예산에 다소 미달된 것은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되면서 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의 특별회계관련 국세수입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기 때문임.

I. 1996년 국세징수 실적(잠정)

(단위 : 억원, %)

	1995년 실적	1996년		1995년 실적대비	1996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총국세	567,745	650,222	649,588	14.4	- 634	- 0.1
○ 일반회계	504,315	566,110	570,136	13.0	4,026	0.7
- 내국세	423,634	463,079	468,665	10.6	5,586	1.2
- 교통세	33,718	47,704	48,240	43.1	536	1.1
- 관세	46,332	54,997	53,089	14.6	- 1,908	- 3.5
○ 특별회계	63,430	84,112	79,452	25.3	- 4,660	- 5.5
- 지방양여금 관련세	20,186	24,336	23,349	15.8	- 887	- 4.1
- 교육세	29,931	43,876	41,241	37.8	- 2,635	- 6.0
- 농특세	13,313	15,900	14,861	11.6	- 1,039	- 6.5

주: 지방양여금 관련세는 토초세의 50%, 주세의 80%, 전확세 전액임.

- 1996년 국세수입규모는 64조 9,588억원으로 1995년대비 14.4% 증가하였으나 1996년 예산 보다는 0.1%(634억원) 미달된 수준임.
-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57조 136억원으로 예산보다 4,026억원(0.7%) 초과되었고
-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7조 9,452억원으로 예산보다 4,660억원(- 5.5%)이 미달되었음.

부동산가격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이자·배당소득세 등의 호조로 예산보다 2,635억원 초과되었음.

- 근로소득세수는 1995년 실적(5조 783억원)대비 8,701억원 증가한 5조 9,484억원이 징수되었음.
-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소수가족 근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세법개정 효과 중 약 -4,066억원이 금년 1~2월중에 환급수요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의 실질증가율은 9.1%이며
- 이는 1995년(35.4%)에 비해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임.

II. 주요 세목별 실적분석

1. 소득세

- 1996년 소득세수(14조 7,669억원)는 경기하강 및

(단위 : 억원, %)

	1995년 실적	1996년		95년대비 증가율	1996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계	136,182	145,034	147,669	8.4	2,635	1.8
신고분	46,767	54,572	49,550	6.0	-5,022	-9.2
원천분	89,415	90,462	98,119	9.7	7,657	8.5

취업자 및 임금동향

(단위 : 만명, %)

	1992	1993	1994	1995	1996
취업자수	1,896	1,925	1,984	2,038	2,076
증가율	1.9	1.5	3.0	2.7	1.9
임금인상률	15.2	12.2	12.7	11.2	12.2 ^u

주: 1) 11월 누계치임.
자료: 통계청, 「산업동향분석」.

2. 법인세

○ 1996년 예산보다 1,020억원 증가한 9조 3,561억원이 징수됨.

가. 신고분

○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예산대비 5,746억원 미달되었음.

기업경영실적분석(제조업)

(단위 : %)

	1992	1993	1994	1995	1995 상반기	1996 상반기
매출증가율	10.3	9.9	18.2	20.4	22.8	11.3
매출액 경상이익률	1.5	1.7	2.7	3.6	4.2	1.8
금융비용/매출액	6.3	5.9	5.6	5.5	5.5	5.7
인건비/매출액	13.9	13.7	13.5	12.6	12.9	12.9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실적분석」

나. 원천분

○ 법인저축성예금의 증가로 예산보다 6,756억원이 초과되었음.

(단위 : %)

	1993	1994	1995	1996.11
저축성예금증가율(평잔)	16.0	19.3	27.6	35.8

(단위 : %)

	1995년 실적	1996년		95년대비 증가율	1996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계	86,626	92,541	93,561	8.0	1,020	1.1
신고분	52,000	55,524	49,778	-4.3	-5,746	-10.3
원천분	34,626	37,017	43,773	26.4	6,756	18.3

3. 상속·증여세

○ 상속·증여세는 1995년보다 저조하였음. 상속·증여세의 속성상 부진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나 증권시장의 침체로 인한 주식이
액 하락 등에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종합주가지수 : 651.22(1995년 말 : 882.94)

(단위 : 억원, %)

	1995년 실적	1996년		95년대비 증가율	1996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계	10,294	12,748	9,665	-6.1	-3,083	-24.2
상속세	6,057	7,629	5,658	-6.6	-1,971	-25.8
증여세	4,237	5,119	4,008	-5.4	-1,111	-21.7

4. 부가가치세

○ 설비투자 및 수출의 부진으로 환급세액의 증가가
둔화되고 환율이 예산편성시보다 상승(예산 : 790
원/\$ → 804.8원/\$)하여 1,824억원이 초과되었음.

* 설비투자증가율 : 약 5.6%(1995년 : 15.9%)

* 수출실적 : 1,298억달러(예산 1,490억달러)

(단위 : 억원, %)

	1995년 실적	1996년		95년대비 증가율	1996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계	146,369	166,064	167,888	14.7	1,824	1.1
국내분	57,502	65,782	66,853	16.3	1,071	1.6
수입분	88,867	100,282	101,035	13.7	753	0.8

5. 특별소비세

○ 가전제품의 출고는 줄어들었으나 중형차 등 고가
신제품 출하로 2,090억원이 초과되었음.

주요 물품 출고동향

(단위 : 천대, %)

	1995	1996	증감률
승용차	986	1,060	7.5
냉장고	2,040	1,829	-10.3
세탁기	1,433	1,326	-7.5
TV	2,192	2,118	-3.4

(단위 : 억원, %)

1995년 실적	1996년		95년대비 증가율	1996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26,171	29,102	31,192	19.2	2,090	7.2

6. 증권거래세

○ 증권시장 침체와 서울인하(1996.4.1 : 0.3% →
0.15%)로 예산보다 725억원 미달되었음.

증권거래 실적

(단위 : 억원, 백만주, %)

	1994	1995	1996	증감률
거래금액	2,297,720	1,429,141	1,426,422	-1.9
거래량	10,911	7,656	7,735	1.3

(단위 : 억원, %)

1995년 실적	1996년		95년대비 증가율	1996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5,027	3,621	2,896	-42.4	-725	-20.0

7. 주세

○ 주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맥주의 출고가 전년수준에 그침으로써 예산보다 2,080억원이 미달되었음.

주류 출고동향

(단위 : 천kl, %)

	1995	1996	증가율
소주	763	791	3.7
맥주	1,850	1,857	0.4

(단위 : 억원, %)

1995년 실적	1996년		1995년대비 증가율	1996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18,245	22,919	20,839	14.2	-2,080	-9.1

9. 교통세

○ 휘발유탄력세율 적용(1996년 12월 14일 : 345원/리터 → 414원/리터)에 따른 일시적인 출고증가로 예산보다 536억원 초과되었음.

(단위 : 억원, %)

1995년 실적	1996년		1995년대비 증가율	1996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33,718	47,704	48,240	43.1	536	1.1

유류 출고동향

(단위 : 천kl, %)

	1995	1996	증가율
휘발유	9,204	10,647	15.7
경유	17,688	18,965	7.2

10. 관세

○ 수입규모(1,502억달러)가 예산(1,520억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할당관세 적용대상 확대로 실효세율이 낮아져 예산보다 1,908억원 미달되었음.

* 1996년 7월부터 철광석·유연탄·천연고무 등 19개 품목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음(43개 품목 → 62개 품목).

(단위 : 억원, %)

1995년 실적	1996년		1995년대비 증가율	1996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46,332	54,997	53,089	14.6	-1,908	-3.5

11. 교육세

○ 지방세·주세 등 본세수입의 부진으로 예산보다 2,635억원 미달되었음.

(단위 : 억원, %)

1995년 실적	1996년		1995년대비 증가율	1996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29,931	43,876	41,241	37.8	-2,635	-6.0

12. 농어촌특별세

- 증권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로 예산보다 1,039억원 미달되었음.

(단위 : 억원, %)

1995년 실적	1996년		1995년대비 증가율	1996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13,313	15,900	14,861	11.6	-1,039	-6.5

Ⅲ. 조세부담 수준 및 직·간접세 비율

1. 조세부담률

- 국민총생산과 지방세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현재로서는 21.0% 내외가 될 전망이고
-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1995년보다 12.9% 증가한 180만 1천원이 될 것으로 보임.

최근의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천원, %)

	1992	1993	1994	1995	1996잠정
조세부담률					
· GNP대비	18.7	18.9	19.9	20.7	21.0
· GDP대비	18.6	18.8	19.8	20.5	20.8
(국세)					
· GNP대비	14.7	14.8	15.6	16.3	16.7
· GDP대비	14.6	14.7	15.5	16.2	16.6
1인당 부담액	1,023	1,141	1,361	1,595	1,801
(국세)	(807)	(891)	(1,063)	(1,256)	(1,426)

2. 직·간접세 비율

- 근로소득세·법인세 등의 경감, 유류 등에 대한 교육세 신규과세 등으로 직접세 비중이 다소 떨어짐.

최근의 직접세 비율 추이

(단위 : %)

	1992	1993	1994	1995	1996잠정
조세	52.8	53.8	53.8	54.7	53.4
· 국세	45.3	45.5	45.7	46.9	45.3

1996년 국세실적(잠정)

(단위 : 억원)

	예 산	실 적	증 감 액
총국세	650,222	649,588	-634
내국세계	487,415	492,015	4,600
직접세계	251,450	253,199	1,749
· 소득세	145,034	147,669	2,635
(신고)	54,572	49,550	-5,022
(원천)	90,462	98,119	7,657
· 법인세	92,541	93,651	1,020
· 토초세	225	137	-88
· 상속세	12,748	9,665	-3,083
(상속)	7,629	5,658	-1,971
(증여)	5,119	4,008	-1,111
· 재평가세	902	2,167	1,265
· 부당이득세	-	-	-
간접세계	227,594	229,424	1,830
· 부가가치세	166,064	167,888	1,824
· 특별소비세	29,102	31,192	2,090
· 주세	22,919	20,839	-2,080
· 전화세	5,888	6,610	722
· 증권거래세	3,621	2,896	-725
인지세	3,577	3,560	-17
과년도수입	4,794	5,832	1,038
교통세	47,704	48,240	536
관세	54,997	53,089	-1,908
방위세	330	143	-187
교육세	43,876	41,241	-2,635
농어촌특별세	15,900	14,861	-1,039

1996년 국세실적(잠정)

(단위 : 억원)

	예 산	실 적	증 감 액
총국세	650,222	649,588	- 634
일반회계	566,110	570,136	4,026
내국세계	463,079	468,665	5,586
· 소득세	145,034	147,669	2,635
· 법인세	92,541	93,561	1,020
· 상속세	12,748	9,665	-3,083
· 부가가치세	166,064	167,888	1,824
· 특별소비세	29,102	31,192	2,090
· 증권거래세	3,621	2,896	-725
교통세	47,704	48,240	536
관세	54,997	53,089	-1,908
방위세	330	143	-187
특별회계	84,112	79,452	-4,660
지방양여금관련세	24,236	23,349	-887
교육세	43,876	41,241	-2,635
농어촌특별세	15,900	14,861	-1,039

1997년 시행 중소기업 지원세제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에서 2월 11일에 발표한 「1997년 시행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내용입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도입(세제지원효과 : 연간 1,200억원)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을 전년도 소득에서 소급공제(1년간)하여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주는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도입
-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 인하(세제지원효과 : 연간 300억원)
 -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보완(세제지원효과 : 연간 500억원)
 -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20%)을 받는 경우에도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각종 명세서 제출을 생략하고 추후 세무서장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 농어촌 창업중소기업·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2년 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율을 종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지원
 -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처분시 증권거래세(0.5%) 면제
 -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벤처기업이 부도가 난 경우 당해 부도주식의 평가손실에 대해 손금산입 인정
 -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양도세 감면
 - 민간건설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중소기업조업자에게 분양시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와 같이 50% 양도소득세 감면

-
-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세제지원
 -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 매입선택권 (atock-option)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이 업종추가(현재는 3년 50%, 2년 20%)시에도 업종전환의 경우와 같이 5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맞추어 조정
 - 종업원수 기준 : 매월말 종업원수 → 연간 월평균 종업원수로 판정
 - 세제지원 기간 : 중소기업 졸업시 최장 2년 → 최장 3년간으로 연장

199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재산세제과에서 2월 12일에 발표한 「199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1996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총리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
 - 재산 기부시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에 과학관 사업 등을 새로이 추가하고
 - 기업상속공제(상속세 기초공제 : 3억원)의 적용대상업종을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 재산가액의 20%가 상속공제되는 금융재산에 비상장주식 및 사모회사채도 포함시킴.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임.

I.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의 범위 확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를 면제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공익사업의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예술·문화, 공중위생·환경보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공익사업
 - 1) 종교사업
 - 2)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운영사업
 - 3) 사회복지법인
 - 4)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
 - 5)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 6) 예술·문화사업
 -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사업
 - 8) 공원, 기타 공중무료이용사업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종전에 인정되던 한국생생보호공단, 의료보험조합 등은 종전과 같이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 과학관사업,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설립한 영유아보육시설사업, 중소기업중앙회의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및 해외박람회 참가사업을 새로이 공익사업에 추가하였음.

II.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의 확대

-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3억원의 상속세 기초공제를 인정(일반은 2억원)하여 가업상속을 지원하고 있음.
- 지금까지 가업상속 대상업종은 사망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그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산업 등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업종간 불형평이 발생함.
-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에서는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시행규칙에서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범위

종전	개정안	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개생보호공단 2. 의료보험조합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연구·조사사업 등 4.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 5. 한국청소년연맹 6. 새마을운동조직 7. 대한법률구조공단 8.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연수 사업·상설전시사업 9. 상공회의소의 직업훈련사업 10.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사회복지 사업 11.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운영사업 12. 재일한국인 본국투자협회의 투지지원사업 13. 스카우트 주관단체 14. 지역신용보증조합 15.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16. 민주통일촉진회 17. 대한민국헌정회 18. 산재의료관리원 	<p>○ 종전유지(* 종전 시행령에서 인정하던 것을 시행규칙에서 인정)</p> <p>8. 중소기업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및 해외박람회 참가사업을 추가</p> <p>○ 종전유지(* 종전 시행규칙에서 규정)</p>	<p>○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설립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p> <p>○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사업</p>

가업상속 대상업종

종전	개정안
○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통 장소에 해당하는 호화음식점업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과 사모사채의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자산 보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종전	개정안
<신설>	○ 다음을 상속공제대상에 포함시킴. (1) 비상장주식 (2) 발행회사가 직접 모집·발행하는 사모회사채

Ⅲ.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의 확대

○ 금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보유보다는 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최저 : 2천만원, 최고 : 2억원)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가 신설되었음.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을

- 시행령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정하였음.

91일물 단기국채 발행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국고국 국고과에서 2월 18일에 발표한 「91일물 단기국채 발행」의 내용입니다.

- 정부는 1996년 12월 21일 국채발행제도 개선에 따라 최초로 91일물 단기국채(외평채권)를 완전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할 예정
- 1997년 2월 17일 입찰실시결과 발행예정액 3천 억원이 전액 낙찰되었음.

(단위 : 억원, %)

계	은행(31개)	투산(8개)	증권사(24개)	종금(24개)
3,000	1,994	411	352	343
(100.0)	(63.1)	(13.7)	(11.7)	(11.5)

1. 단기국채(91일물 외평채권) 입찰결과 및 분석

- 응찰 : 95개 기관 4,391억원
- 낙찰
 - 낙찰기관수 : 87개 기관
 - 낙찰금액 : 3천억원(100.0%)
 - 평균낙찰금리 : 12.14%
 - 최고낙찰금리 : 12.16%
 - 최저낙찰금리 : 12.09%
 - 금융권별 낙찰금액 현황

2. 입찰결과분석

- 완전경쟁입찰 결과 응찰금액이 발행예정금액을 크게 상회하였으며(응찰률 146.4%), 전액 낙찰 되었음.
- 응찰률과 낙찰률이 크게 높은 이유
 -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대상처를 선호하는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risk가 없는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
 - 완전경쟁입찰 실시 후 실세 발행에 따른 금리 merit

3. 향후 단기국채 발행계획 및 기대효과

- 금년중 91일물 단기국채는 3회에 걸쳐 9천억원 추가 발행예정이며, 180일물 단기국채도 2천억원 발행예정(1997년 9월 24일)

- 기대효과
 - 일정한 물량공급 등으로 단기국채의 유통금리가 형성될 경우 기준금리 제공으로 채권시장 효율성 제고(예 : FRN 발행활성화 기대)

금융개혁의 추진실적과 주요과제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국민저축과에서 1월 25일에 발표한 「금융개혁의 추진실적과 주요과제」의 내용입니다.

I. 금융산업의 현황과 금융환경의 변화

(단위 : 조원, %)

○ 지난 개발연대 이후 30여년간 자본 축적이 빈약한 상태에서 압축·고도성장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이 실물경제의 지원에 치중하여 온 결과

- 금융산업은 기업성을 바탕으로 한 독립된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통제된 가격(금리)하에서 양적으로는 팽창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하지 못하였음.
- 이 과정에서 금융구조가 공급자 위주로 형성되고, 정부가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암묵적 보험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금융을 보는 국민적 시각도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처럼 인식하게 되었음.

	1975	1980	1985	1990	1995
금융자산 잔액	13.8	51.3	139.3	368.6	850.9
금융자산 증가율	29.1	30.7	16.7	22.6	17.0
금융연관비율	2.17	2.39	3.28	4.18	5.26

주: 외국의 금융연관비율(1995년 기준) : 미국은 7.22%, 일본은 8.43%임.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자유화'와 '개방화'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금융제도와 관행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흡
 - 통화관리 : 전통적인 간접규제수단인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제도 등의 운용여건 및 활용이 미흡
 - 금리 : 높은 성장률, 기업의 높은 차입의존도, 금융중개의 비효율성 등의 원인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1. 금융산업의 현 주소

○ 금융부문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금융연관비율(국내금융자산/경상 GNP)이 1975년의 2.17에서 1995년에는 5.26으로 증가

주요국의 금리비교

(1995년 평균시장금리, 한국은 1996년)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대만
11.9	6.3	3.0	7.3

○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지속

- 사업성 위주의 기업신용평가모델 개발, 신용대출 담당자에 대한 면책기준 마련, 신용정보의 축적 등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담보선호 경향은 여전히 지속

(단위 : %)

	1991 말	1993 말	1995 말	1996.9
담보대출	55.7	51.8	52.8	50.8
신용대출	44.3	48.2	47.2	49.2
(보증부신용)	(16.4)	(18.2)	(12.7)	(13.3)
(순수신용)	(27.9)	(30.0)	(34.5)	(35.9)
계	100.0	100.0	100.0	100.0

주: () 안의 숫자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은행

2.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

가.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

- 세계적인 금융자유화·개방화의 진전과 비약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금융산업의 '범세계화' '증권화' '겸업화'가 급속히 발달
- 영국, 일본의 빅뱅(Big Bang) 등 자국의 금융산업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강화
- 경쟁 확대와 파생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사고예방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기능 강화

나. 국내 금융환경의 변화

- OECD 가입을 계기로 금융산업의 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
 - 1998년말 금융산업의 개방이 사실상 완료
 - 2001년말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대부분 완료
- 고비용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금융제도와 관행의 변화가 시급
- 예금보험기구의 정비 등 금융기관의 퇴출에 따른 완충장치의 구축으로 본격적인 구조개편 여건 조성

II. 최근의 금융개혁 추진실적

-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를 촉진하여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통한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 은행·증권·보험의 3대 영역을 근간으로 유지하면서 제도개혁과 단계적인 업무겸업화를 추진

1. 금융자유화의 추진

가. 금리자유화

- 3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금리를 자유화
 - 제1단계(1991.11) : 단기여신 및 3년 이상 장기

- 거치식 수신금리
- 제2단계(1993.11) : 정책자금을 제외한 여신과 2년 이상 예금금리
- 제3단계(1995.11) : 요구불성 예금을 제외한 모든 금리

나. 통화관리방식의 개편

- 직접적인 통화관리수단인 민간신용 가이드라인을 폐지(1991)하는 등 통화관리를 직접적인 방식에서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 추진
- 공개시장조작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을 도입(1993)하고 주거래 대상물인 통안증권의 발행금리를 단계적으로 실세화
- 자동대출방식의 재할인제도를 총액한도대출제도로 전환하여 재할인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 마련(1994)
-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
- 평균지급준비율 : 9.4% → 7.4%(1996년 4월) → 5.5%(1996년 11월)

다. 정책금융의 단계적 축소·정비

- 상업어음 할인 등 일반금융지원 성격의 정책자금은 일반금융으로 전환

- 한시적으로 정책금융은 단계적으로 회수하여 폐지
- 농·수·축산 등 취약부문 지원자금은 재정지원으로 전환
- 정책금융비중 축소 : 1992년 말 23.4% → 1996년 9월 말 15.5%

라. 대기업 여신관리제도의 개선

- 여신관리제도를 편중여신 억제 등 본연의 목적 위주로 운용하고 산업정책관련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
- 계열기업군에 대한 기업투자 승인제도 완전폐지(1995년 4월)
- 부동산투자 승인 대상계열 축소(30대 → 10대)
- 여신한도(Basket)관리 대상계열 축소(50대 → 30대 → 10대)

마. 금융기관 내부경영의 자율화

-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1993년)하고, 이를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로 변경(1996년)하여 은행장 선출방식을 개선
- 보험회사의 점포설치 인가제를 폐지(1995년)하고, 은행과 증권회사의 점포신설을 건전성 기준 내에서 자율화(1996년)

바.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을 폐지하고 식당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에 대한 여신제한을 완화
- 보험회사의 신고대상 보험상품을 대폭 축소하고 자율운용 자산제도를 도입
-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여신금지업종제도를 폐지

사. 증권시장의 시장기능 제고

- 주식물량조절제도를 폐지하고 증자 및 공개요건을 개선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수급조절기능을 도모
- 기업공개시 공모주식의 가격결정 및 소화방식을 자율화
- 주식가격 등락제한폭을 확대(6% → 8%)하고 신용융자규제를 완화
- 증시안정기금을 해산하여 인위적인 가격개입 소지를 제거

2. 금융개방의 추진

가. 금융시장의 개방

- 주식시장의 개방

- 1992년 1월 외국인의 국내상장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한 이후 투자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0년 말에는 총액투자한도를 철폐하고 1인당 투자를 10%까지 인상

(단위 : %)

	1992.1	1994.12	1995.7	1996.4	1996.10
총액투자한도	10	12	15	18	20
1인당 한도	3	3	3	4	5

- 1996년 12월 외국인의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를 허용하였으며 2000년 말에는 매수한도를 철폐

○ 채권시장의 개방

- 1994년 7월 : 중소기업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 1996년 10월 : 채권형 country fund의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 허용
- 1999년 12월 : 일정한도 내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5년 이상) 투자허용
- 국내외 금리차가 2% 이내로 축소되는 경우 완전 자유화

○ 외국인의 국내증권 발행

- 1995년 5월 : ADB의 국내 원화채권 발행 허용
- 1996년 5월 : 외국기업의 국내주식 발행 및 상장 허용
- 1996년 7월 : 외국기업·정부·금융기관의 국내 원화채권 발행 허용

나. 금융산업의 개방

○ 은행

-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치의 자유화
 - 1993년 : ENT(경제적 수요심사) 폐지
 - 1995년 : 1년간의 사무소 전치주의 폐지
 - 1997년 1월 : '총자산 기준 세계 500대 은행' 요건 폐지
- 1998년 12월 : 외국은행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허용

○ 증권회사

- 1990년 11월 : 외국증권회사의 지점 설치 및 합작법인 설립 허용
- 1995년 5월 : 외국증권회사 지점 설치시 사무소 전치주의(1년) 폐지
- 1997년 4월 : 증권회사 설립에 따른 ENT 폐지
- 1998년 12월 : 기존 증권회사에 대한 외국사 지분참여비율 제한(50%) 폐지

○ 보험회사

- 1987년 : 외국보험회사의 지점·합작사·현지법인 설립 허용
- 1997년 1월 : ENT 폐지
- 복수대리점(1993년), 독립대리점(1996년) 및 보험중개인 허용(1997년)

○ 투자신탁회사

- 1996년 12월 : 외국투신사의 지점 설치 및 합작법인 설립 허용

- 1998년 12월 : 현지법인 신설 허용

○ 종합금융회사

- 1997년 1월 : 외국인의 기존사 지분 참여 제한(50%) 폐지

○ 할부금융회사

- 1997년 1월 : 외국인에 대한 완전개방

3. 금융산업의 개편 추진

가. 은행

○ 소유구조의 개선

-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를 방지하면서 주인 있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를 도입(1994)
 - 금융전업기업가 주식소유 한도 : 12%
 - 기타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 : 4%
- 금융전업기업가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업기업가에 대승인하는 범위 내로 탄력화(1996년)

○ 비상임이사회 제도의 도입

- 산업자본의 은행경영지배를 막으면서 주주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사회제도를 개편(주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비상임이사가 상임이사보다 많도록 이사회를 구성)
- 동 이사회에서 은행의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의결토록 함으로써 은

- 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혁신을 유도
- 은행신탁제도의 개편
 - 장기·실적배당상품을 위주로 하는 신탁 본래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탁상품의 최저만기를 확대(1년 → 1년 6개월)하고 원본 보전상품을 단계적으로 축소

나. 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

- 투자신탁회사의 운용·판매조직을 분리
 - 기존 투신사 : 운용·판매조직 분리시 본체는 증권사로 전환하고 운용회사를 자회사로 설립
 - 신설 투신사 : 운용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설립(명칭 : 투자신탁 운용회사)
- 증권·투신업의 상호진출 허용
 - 증권사의 자회사로 투신사 설립을 허용
 - 투자자문사의 투신사 전환과 기존 투신사의 증권사 전환을 허용

다. 보험회사

- 지금까지는 보험회사 위주의 모집인과 대리점 체제로 운영
- 보험회사와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대하는 보험중개인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제고

라. 투자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 1991년 및 1994년에 투자금융회사를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로 전환(17개사)
- 1995년에 투자금융업과 종합금융업을 통합하는 동시에 1996년 7월 15개 투자금융회사 전부를 종합금융회사로 전환

마. 상호신용금고

-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예·적금업무와 소액 신용대출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종래의 계·부금 위주의 상호금융에서 벗어나 일반금융기관으로 전환(1995년)

바. 금융하부구조의 확충

-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1996년)하고, 금융·상품 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
 - 선물거래업자 내허가(35개사)
 - 선물협회 및 선물거래소 설립준비단 구성
- 콜중개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제1·2금융권 콜시장을 통합(1996년 11월)하여 단기자금의 수급 원활화와 단기금리의 안정화를 도모
- 장외주식시장의 육성기반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기회를 확대
 - KOSDAQ 증권사 설립(1996년 7월)
 - 장외주식의 등록요건 완화 및 수요기반 확충

4. 금융구조개편의 본격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가. 예금자보호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확충

- 은행 : 예금보험공사 설립(1996)
- 증권회사 :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신설추진(1996)
- 보험회사 : 보험보증기금 설치(1989)
- 금고·종금 : 신용관리기금 설치(1983)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마련(1996)

-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병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근거를 마련
- 부실금융기관의 자체 정상화를 위한 제도 마련
 - 자본금 증액, 보유주식처분 등의 경영개선조치 명령
 - 합병, 제3자 인수 등의 권고 및 알선
 - 예금보험기구의 합병·인수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등
-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조정 방안
 - 증권·보험회사의 신규진입 허용방안
 - 여신전문금융기관의 통합방안 등을 검토중

Ⅲ. 주요 추진과제

1. 기본 방향

- 우리 금융산업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개방추세에서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음.
-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전략산업, 세계의 중심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할 시기임.
- 따라서 금융산업의 개혁은 장·단기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 단기과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금융시장의 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
 - 중·장기 과제는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주어진 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금년중 정부는 각종 금융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데 주력
 - 시장원리에 의한 간접통화관리방식을 조기에 정착
 -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신규진입 허용 등을 통한 경쟁체제 확립
 -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전환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와 전문화 유도

-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기능 강화

2. 간접통화관리방식의 조기정착

가. 단기과제(1997년 1/4분기까지 추진)

- 예금지급준비율을 1.5~2% 포인트 수준 이하하고 초과유동성은 총액대출한도 감축 등을 통하여 흡수
- CD 발행한도를 철폐하고 지급준비율 2%를 부과
- RP 매매 및 통안증권 발행을 완전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및 거래방식을 다양화
- 국고여유자금의 활용을 통하여 세수 등 재정활동으로 인한 지준변동을 완화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성 해외자본의 유출입에 대응한 통화관리수단으로 활용

나. 중장기과제

- 장기적으로 총액한도대출의 정책금융성격을 해소하고 재할인금리를 실세화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통한 유동성조절기능을 강화
- 금융시장 여건을 보아 가며 단기금리를 공개시장조작 목표로 활용
-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등 제4단계 금리자유화는 금융시장 여건을 보아 가며 적극 추진

3.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체제의 확립

가. 단기과제

-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기본 방침

-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별로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상호 진출 허용 여부를 검토
- * 핵심업무
 - 은행 : 지급수단의 발행·교환·결제업무
 - 증권 : 주식의 위탁매매에 관한 업무
 - 보험 : 보장성 보험상품의 판매·운영업무
- 다만 업무영역 확대가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에 주는 영향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



검토대상 업무

- 금융채 발행허용
- 회사채 발행허용
- 기업어음(CP) 업무
- 유통어음 할인업무
- 지방은행 업무구역 확대
- CD 및 표지어음 발행업무
- 종업원퇴직 적립신탁
- 회사채·주식 주간사업무
- 실적배당부 보험상품
- 유가증권 매매업무

○ 금융기관별 업무영역 확대조정 시안

- 은행
 - 금융상품의 장·단기 구분완화 추세에 따라 금융채 발행을 허용
 - 은행내규로 규제되고 있는 유통어음의 할인취급 허용
 - 신탁계정의 종업원 퇴직적립신탁에 대해서도 종퇴보험과 같은 세제혜택 부여 (지방생보사의 영업상태를 감안하여 1998년 이후 허용)
 - 지방은행의 업무구역 제한을 완화
-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 은행의 금융채발행에 대응하여 단기수신상품인 CD 및 표지어음 발행 허용
 - 회사채인수 주간사업무 허용
- 증권회사
 - 유가증권 성격을 가진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업무 허용
 -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회사채발행 허용
 - * 지급보증업무는 단계적으로 축소
- 투자신탁회사
 - 종업원 퇴직적립신탁에 대해서도 종퇴보험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 생명보험회사
 - 종업원퇴직적립신탁 허용에 대응하여 변액보험 (분리계정을 이용한 실적배당부 상품)을 허용
 - 금년중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1998년 이후 허용
- 종합금융회사
 - 은행의 유통어음 할인, 증권회사의 거액 CP 취급에 대응하여 유가증권 매매업무 및 주식인수 주간사업무를 허용

⇒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조정 of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4월 이후로 하여 금융개혁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

○ 금융기관의 신규진입 허용

- 금년중 ENT를 폐지하기로 OECD와 약속한 보험회사(1997년 1월1일)·증권회사(1997년 4월 1일)는 조속한 시일 내로 투명한 진입기준을 마련
- 증권회사 인가기준은 증권거래법 시행령(2월중 입법예고)에서 규정
- 은행, 종금, 투신 등 여타 금융기관은 개방일정에 맞추어 금융권별 신규진입 허용시기 및 진입기준을 검토

○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구조조정

- 대상기관 : 4개 종류 96개 회사
 - 리스(25), 신용카드(36), 할부금융(31), 신기술사업금융회사(4)
- 구조조정 방안
 - 기업금융회사, 소비자금융회사 및 종합여신회사로 통합
 - 개별 단종회사는 기업 또는 소비자금융회사로 전환하고, 이들 회사들이 합병하는 경우 종합여신회사로 전환
- 1997년중 단일법안을 마련하고 1998년부터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
 - 인가기준의 재관화 : 인가의 투명성 제고
 - 영업규제 대폭 완화

- : 채무부담한도 등 건전성 규제만 유지
- 퇴출제도 마련
 - : 불법·부실영업시 제재절차 명확화

○ 선별금융제도의 개선

- 여신금지부문의 축소조정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자금의 여신허용범위 확대
-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부문에 대한 여신규제를 철폐하는 등 여신금지업종제도를 완화
- 대기업(10대 계열)의 부동산투자승인제도 폐지 여부 검토
-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수준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지방소재 은행의 의무비율을 일부 완화
- 지방조성자금 환류제도의 개편방안 강구

나. 중·장기 검토과제

- 은행의 소유구조에 관한 문제
-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또는 폐지문제
- 금융기관 지주회사의 설립허용 문제
- 금융권간의 직접적인 겸업허용(Universal Banking System으로의 전환) 문제

4.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을 통한 대형화와 구조개편 유도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시기

(1997.3.1)에, 맞추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인가기준을 제정

- 인가기준의 사전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합병·전환을 유도

- 합병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사항을 최대한 강구하여 금융기관의 합병노력을 지원

* 가 예시한 지원사항

-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상증자시 일정범위 내에서 특례를 적용(배당금 요건·증자한도 제한 배제)
-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간 합병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중 1개사의 자회사 설치를 허용

- 우량금융기관간의 합병 등을 통한 선도은행(Leading Bank)의 육성방안은 중장기과제로 검토

5.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조기사정장치의 도입 및 발전방안 강구
- 부실금융기관의 판정을 위한 재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을 사전에 제시하여 부실여부 판정의 객관성을 제고

IV. 금융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원의 협조체제 구축

- 재정경제원은 '금융개혁위원회'의 활동(과제선정,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조하며, 금융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를 조속히 반영

- 다만 지난 연말의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대외협약에 의해 시한이 정해진 사항, 금융개혁위원회에서 과제로 선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 가급적 실제 시행시기를 4월 이후로 하여 금융개혁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고
 - 이미 시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금융개혁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반영

〈참고〉 자본이동 자유화 및 금융산업 개방계획

1. 자본이동 자유화

- 외국인 주식투자
 - 총액투자한도 철폐(2000년 12월)
 - 1인당 투자한도(1996년 말 5%)를 10%까지 인상(10% 이상은 직접투자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2000년 12월)
- 외국인 채권투자
 - 대기업
 - 일정한도 내 무보증 장기채(5년 이상)(1999년 12월)
 - 금리차가 2% 이내로 축소되는 경우 완전 자유화
- 외국인의 수익증권 투자
 - 주식형 수익증권 매수한도 철폐(2000년 12월)

○ 해외증권 발행

- 발행한도 폐지(1999년 12월)
- 발행자 요건 완화(1999년 12월)

○ 차관

- 상업차관 : 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자유화(1999)
- 현금차관 : 거시경제 안정·내외금리차 2% 이내 축소시 완전 자유화
- 직접투자 성격의 5년 이상 차관 : 외국인투자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받는 5년 이상(시설재 도입용) 장기차관 허용(1997년 1월)

○ 무역신용

- 연지급 수입기간 확대
 - 대기업 : 180일(1999년 12월)
 - 실수요에 대해서는 180일 이상도 허용(2001년)
-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1999년 12월)

○ 해외투자

- : 자기자본 조달의무 폐지(1997년 12월)

○ 해외예금

- : 해외외화예금 한도 철폐(1998년 12월)

2. 금융산업 개방

○ 은행업

- 현지법인 설립허용(1998년 12월)

○ 투자신탁업

- 국내 기존 증권투신사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인당 투자비율(10% 이내) 폐지(1997년 1월)
- 국내 기존 증권투신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50% 미만) 폐지(1997년 12월)
- 신설·합작법인 설립 허용(1998년 12월)
- 외국사 지점 설치시 사무소 전치주의 폐지(1998년 12월)

○ 단자사·종금사

- 국내 기존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50% 이하) 폐지(1997년 1월)

○ 증권업

- 국내 기존사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인당 투자비율(10% 이하) 폐지(1997년 1월)
- 신설 현지법인 설립 허용 및 국내 기존사 외국인투자 비율 제한(50% 이하) 폐지(1998년 12월)

○ 투자자문업

- 국내 기존사 외국인투자가 1인당 투자비율(10% 이내) 폐지(1997년 1월)
- 신설 현지법인 허용(1997년 12월)
- 국내 기존사 외투비율 제한(50% 미만) 폐지(1998년 12월)

○ 보험업

- 합작생보사 최저지분(49%) 폐지 및 보증보험업·비생보 재보험업 허용(1997년 4월)
- 보험 독립대리점 허용(1997년 4월)

- 보험대리 및 중개업·보험감정업 허용(1998년 4월)

○ 상호금융업

- 특정다수인 대상 상호금융업 허용(1997년 1월)

○ 신용판매 금융업

-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허용(1997년 1월)

○ 신용조사업

- 신용평가업 허용(1997년 1월)
- 신용조사업 부분 허용(50% 미만)(1997년 1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재산세제과에서 2월 13일에 발표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정부는 1996년 12월 31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바 있으며 시행령에서 위임된 유희토지 판정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개선내용)

- (1) 수도권 이외에 소재한 공장의 증설예비면적 인정범위를 공장기준면적의 10%에서 20%로 확대함.
- (2) 정구장·대중골프장에 대한 유희토지 판정기준을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과 일치시켜 법간 과세형평을 도모함.
- (3) 광업용 토지에 대한 유희토지 판정방법을 보완하여 노천석회석광토지에 대하여는 채광인가 면적을 유희토지에서 제외함.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중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임.

I. 공장증설 예비용지에 대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확대

- 기 발표된 산업용지 공급원활화대책에 따라 수도권 이외에 소재한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증설 예비면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향후 공장 증설에 따른 용지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수도권 이외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을말함.

<공장부지 중 토초세를 과세하지 않는 토지>

【현행】

- 다음 (1)+(2)의 면적

(1) 공장입지 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업종별 기준공장면적을

(2) 공장증설 예비면적

- 공장부지가 (1)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토지에 대하여는 (1)의 면적의 10% 이내(3천평방미터를 한도로 함)에서 인정

【개정안】

- 토초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장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장증설예비면적을 수도권 이외에 소재하는 공장에 한하여 (1)의 면적의 20%까지 확

대하여 제한없이 허용함.

- * 수도권 외 소재 공장부지에 대한 토초세 과세대상 계산 예
- 공장건물 연면적(3만평방미터), 공장부지(35만평방미터)
- 업종 : 합금철강 제조업
- 업종별기준 공장면적률 : 10%(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함.)

(단위 : 천평방미터)

	현행	개정안
(1)의 면적	300	300
(2)의 면적	3	60
과세대상	47	없음

II. 체육시설업용 토지에 대한 유희토지 판정방법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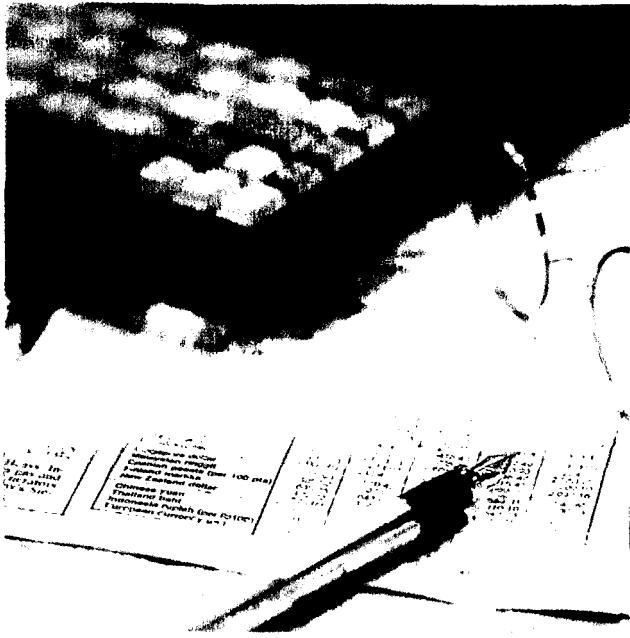
- 정구장 및 대중골프장용 토지의 유희토지 판정기준인 수입금액비율 적용기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 부동산판정기준과 일치하여 법간 과세형평을 도모

현행	개정안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격의 4% 이상이면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3% 이상이면 과세 제외

Ⅲ. 석회석 광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방법 보완

- 광업용 토지 중 주로 지표면에서 채광하는 노천광인 석회석광 토지에 대하여는 채광인가면적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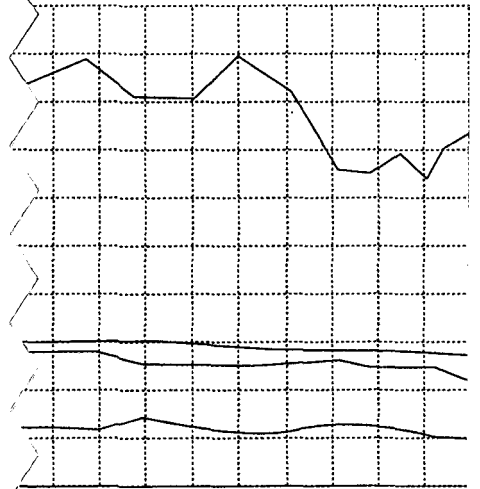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광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광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 금속광 : 20만평방미터 초과토지	- 금속광 : 20만평방미터 초과토지
- 비금속광 : 60만평방미터 초과토지	- 비금속광 : 60만평방미터 초과토지
- 석회석광 : 80만평방미터 초과토지	- 석회석광:80만평방미터 초과토지. 단, 노천 광인 석회석광의 경우에는 채광인가 면적 초과 토지



재정통계

자산재평가세면권 통계

1. 자산재평가세 액산 및 징수
2. 자산재평가세 부과
3. 자산재평가세 산출내역
4. 자산별 재평가 상황



1. 자산재평가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명, 백만원, %)

	납세자수	예산액 (A)	부과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비율	
							(B/A)	(C/A)
1965	4	63	170	86	86	-	136.0	135.8
1966	189	274	363	335	334	2	122.3	121.7
1967	153	528	816	726	724	2	137.4	137.1
1968	757	856	817	822	800	23	96.1	93.4
1969	115	1,007	900	871	870	1	86.5	86.4
1970	135	1,178	783	717	716	-	60.8	60.8
1971	125	1,248	1,284	1,317	1,315	2	105.5	105.3
1972	126	1,074	1,513	1,431	1,429	2	133.3	133.1
1973	146	1,180	1,653	1,041	1,041	-	88.2	88.2
1974	240	2,090	2,456	2,421	2,421	-	115.8	115.8
1975	126	5,527	5,150	5,077	5,077	-	91.9	91.9
1976	247	8,767	8,360	7,881	7,881	-	89.9	89.9
1977	186	5,479	7,991	7,764	7,746	18	141.7	141.4
1978	207	6,915	6,759	6,763	6,763	-	97.8	97.8
1979	278	9,804	11,477	11,159	10,389	769	113.8	106.0
1980	451	23,190	17,231	22,535	22,418	117	97.2	96.7
1981	561	28,129	40,800	40,178	40,178	-	142.8	142.8
1982	479	55,767	57,344	57,632	57,629	3	103.3	103.3
1983	302	64,467	50,288	50,293	50,293	-	78.0	78.0
1984	430	55,633	35,052	35,060	35,032	29	63.0	63.0
1985	176	36,315	16,686	16,686	16,686	-	45.9	45.9
1986	125	28,066	6,049	6,049	6,049	-	21.6	21.6
1987	127	6,129	13,445	13,464	13,452	12	219.7	219.5
1988	187	9,045	34,689	32,791	32,723	68	362.5	361.8
1989	204	45,885	89,707	93,635	89,671	3,964	204.1	195.4
1990	150	49,685	95,231	95,282	95,282	-	191.8	191.8
1991	130	32,768	65,905	66,165	65,899	266	201.9	201.1
1992	94	40,935	68,911	68,877	68,876	1	168.3	168.3
1993	144	115,557	99,578	98,525	98,505	20	85.3	85.2
1994	88	129,700	86,306	86,406	86,406	-	66.6	66.6
1995	152	80,300	93,388	93,087	89,105	3,982	115.9	111.0

주 : 1.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2. 계수를 백만단위로 맞추기 위해 반올림하였으므로 합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자산재평가세 부과

(단위: 백만원)

		세액합계	자진납부	추징 또는 환부	당기에 납부한 연부연납세액	차년도 연부연납세액
1981	계	40,800	24,404	1,155	15,241	20,095
	영리법인	40,730	24,363	1,155	15,212	20,062
	외국법인	41	16	-	25	16
	비영리법인	6	6	-	-	6
	개인	22	19	-	4	11
1982	계	57,343	33,988	467	22,888	31,756
	영리법인	57,285	33,949	466	22,870	31,727
	외국법인	16	-	-	16	-
	비영리법인	15	15	-	-	13
	개인	27	24	1	2	15
1983	계	50,288	17,008	520	32,760	19,127
	영리법인	50,089	16,810	538	32,741	18,935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22	9	-	13	8
	개인	177	190	△18	6	184
1984	계	35,052	17,117	237	17,698	13,004
	영리법인	34,799	17,055	230	17,515	12,986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14	-	8	6	-
	개인	239	62	△1	178	18
1985	계	16,686	3,876	110	12,700	2,825
	영리법인	16,650	3,853	115	12,682	2,820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	-	-	-	-
	개인	36	23	△5	18	5
1986	계	6,049	2,645	83	3,321	2,019
	영리법인	6,025	2,618	85	3,321	2,001
	외국법인	18	18	-	-	18
	비영리법인	-	-	-	-	-
	개인	6	8	△2	-	-
1987	계	13,445	11,047	167	2,231	9,925
	영리법인	13,382	11,009	160	2,213	9,925
	외국법인	18	-	-	18	-
	비영리법인	-	-	-	-	-
	개인	45	38	7	-	-
1988	계	34,689	22,678	1,802	10,209	20,238
	영리법인	34,567	22,587	1,802	10,178	20,199
	외국법인	6	6	-	-	-
	비영리법인	-	-	-	-	-
	개인	116	85	-	31	84

2. 자산재평가세 부과(계속)

(단위: 백만원)

		세액합계	자진납부	추징 또는 환부	당기에 납부한 연부연납세액	차년도 연부연납세액
1989	계	89,707	67,746	△619	22,580	65,780
	영리법인	89,639	67,746	△619	22,512	65,780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 68	- -	- -	- 68	- -
1990	계	95,231	25,756	△281	69,756	21,713
	영리법인	95,231	25,756	△281	69,756	21,713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 -	- -	- -	- -	- -
1991	계	65,905	39,175	4,300	22,430	43,726
	영리법인	65,868	39,138	4,300	22,430	43,689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37 -	37 -	- -	- -	37 -
1992	계	68,911	24,088	1,253	43,570	20,882
	영리법인	68,911	24,082	1,259	43,570	20,882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 -	- 6	- △6	- -	- -
1993	계	99,578	78,806	△221	20,993	78,924
	영리법인	99,578	78,806	△221	20,993	78,924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 -	- -	- -	- -	- -
1994	계	86,306	15,509	△721	71,518	13,660
	영리법인	86,289	15,492	△721	71,518	13,657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17 -	17 -	- -	- -	3 -
1995	계	93,388	76,092	3,552	13,744	73,578
	영리법인	93,371	76,078	3,552	13,741	73,578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17 -	14 -	- -	3 -	- -

주 : 1. △는 환부세액을 표시함.

2. 차년도 연부연납세액은 당해연도에 신고한 자산재평가세 중 다음 해에 납부할 세액 상당분임.

3. 세액합계 = 자진납부 + 추징 또는 환부 + 당기에 납부한 연부연납세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자산재평가 산출내역

(단위: 명, 백만원)

		재평가인원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이월결손금	차감과세표준액	산출세액
1981	계	561	5,319,661	3,167,184	2,152,478	450,339	1,702,139	51,076
	영리법인	555	5,311,725	3,161,860	2,149,865	450,339	1,699,526	50,997
	외국법인	1	3,592	2,530	1,062	-	1,062	32
	비영리법인	1	2,001	1,591	409	-	409	12
	개인	4	2,343	1,202	1,141	-	1,141	34
1982	계	479	9,096,697	4,964,683	4,132,015	341,060	3,790,955	66,861
	영리법인	471	6,001,875	3,434,458	2,567,417	341,060	2,226,356	66,793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4	3,092,420	1,529,153	1,563,267	-	1,563,267	29
	개인	4	2,403	1,071	1,331	-	1,331	40
1983	계	302	3,488,696	1,862,631	1,626,065	227,337	1,398,728	36,020
	영리법인	290	3,080,097	1,666,626	1,413,471	227,315	1,186,156	35,598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5	383,314	184,214	199,100	22	199,078	17
	개인	7	25,285	11,790	13,494	-	13,494	405
1984	계	430	2,432,008	1,209,295	1,222,713	129,396	1,093,317	32,799
	영리법인	425	2,429,242	1,208,567	1,220,675	129,396	1,091,279	32,738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	-	-	-	-	-	-
	개인	5	2,766	727	2,038	-	2,038	61
1985	계	176	377,513	136,356	241,157	20,480	220,676	6,620
	영리법인	169	375,426	135,360	240,065	20,480	219,585	6,588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	-	-	-	-	-	-
	개인	7	2,087	996	1,091	-	1,091	33
1986	계	125	389,755	165,466	224,289	42,693	181,596	5,448
	영리법인	122	388,050	165,167	222,883	42,693	180,190	5,406
	외국법인	1	1,382	170	1,212	-	1,212	36
	비영리법인	-	-	-	-	-	-	-
	개인	2	322	129	193	-	193	6
1987	계	127	1,244,996	494,516	750,480	32,862	717,618	21,528
	영리법인	122	1,240,738	493,295	747,443	32,862	714,581	21,438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	-	-	-	-	-	-
	개인	5	4,258	1,221	3,037	-	3,037	90
1987	계	187	2,713,120	1,327,347	1,385,773	46,105	1,339,668	40,190
	영리법인	183	2,704,526	1,324,685	1,379,841	46,105	1,333,736	40,012
	외국법인	1	427	219	208	-	208	6
	비영리법인	-	-	-	-	-	-	-
	개인	3	8,167	2,443	5,724	-	5,724	172

3. 자산재평가 산출내역(계속)

(단위: 명, 백만원)

		재평가인원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이월결손금	차감과세표준액	산출세액
1989	계	204	10,512,647	5,545,292	4,967,355	193,035	4,774,320	143,230
	영리법인	204	10,512,647	5,545,292	4,967,355	193,035	4,774,320	143,230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 -	- -	- -	- -	- -	- -	- -
1990	계	150	1,884,225	718,582	1,165,643	34,473	1,131,170	33,935
	영리법인	150	1,884,225	718,582	1,165,643	34,473	1,131,170	33,935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 -	- -	- -	- -	- -	- -	- -
1991	계	130	5,446,630	1,350,572	4,096,058	658,334	3,437,724	103,131
	영리법인	129	5,443,689	1,350,117	4,093,572	658,334	3,435,238	103,057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1 -	2,941 -	455 -	2,486 -	- -	2,486 -	74 -
1992	계	94	3,058,887	389,599	2,669,288	142,557	2,526,731	45,621
	영리법인	78	1,929,357	270,802	1,658,555	137,848	1,520,707	45,621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16 -	1,129,530 -	118,797 -	1,010,733 -	4,709 -	1,006,024 -	- -
1993	계	144	8,186,361	2,103,895	6,082,466	1,011,912	5,070,554	152,017
	영리법인	143	8,182,901	2,103,752	6,079,149	1,011,912	5,067,237	152,017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1 -	3,460 -	143 -	3,317 -	- -	3,317 -	- -
1994	계	88	1,266,340	136,205	1,130,135	83,496	1,046,639	31,398
	영리법인	86	1,264,864	136,135	1,128,729	82,740	1,045,989	31,378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2 -	1,476 -	70 -	1,406 -	756 -	650 -	20 -
1995	계	152	6,633,571	1,034,187	5,599,384	561,602	5,037,782	151,133
	영리법인	151	6,633,070	1,034,137	5,598,933	561,602	5,037,331	151,119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1 -	501 -	50 -	451 -	- -	451 -	14 -

주 : 1. 재평가차액 = 재평가액 - 장부가액
 2. 차감과세표준액 = 재평가차액 - 이월결손금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자산별 재평가 상황

(단위: 백만원)

	자산종류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취득가액
1981	계	5,319,661	3,167,184	2,152,478	3,736,275
	감가상각자산	4,008,861	2,559,844	1,449,016	3,160,264
	유형감가상각자산	4,003,452	2,556,174	1,447,278	3,156,337
	무형감가상각자산	5,408	3,671	1,738	3,927
	토지	1,114,245	466,176	648,069	464,775
	주식	194,458	140,244	54,214	110,323
입목	2,098	919	1,179	913	
1982	계	9,096,697	4,964,683	4,132,015	5,961,097
	감가상각자산	7,794,293	4,381,809	3,412,484	5,379,274
	유형감가상각자산	7,789,733	4,378,438	3,411,296	5,375,873
	무형감가상각자산	4,559	3,371	1,188	3,401
	토지	1,196,105	507,358	688,747	504,858
	주식	101,911	73,208	28,703	74,660
입목	4,388	2,307	2,081	2,305	
1983	계	3,488,696	1,862,630	1,626,065	2,314,225
	감가상각자산	2,315,193	1,455,698	859,495	2,056,491
	유형감가상각자산	2,105,398	1,337,355	768,044	1,938,331
	무형감가상각자산	209,794	118,343	91,451	118,160
	토지	1,048,130	348,183	699,947	214,771
	주식	124,631	58,493	66,139	42,709
입목	742	257	484	254	
1984	계	2,432,008	1,209,295	1,222,713	1,737,586
	감가상각자산	1,552,292	983,030	569,262	1,517,758
	유형감가상각자산	1,551,569	982,477	569,091	1,517,208
	무형감가상각자산	723	552	171	549
	토지	849,573	205,755	643,818	199,092
	주식	27,713	19,804	7,909	20,018
입목	2,431	706	1,724	719	
1985	계	377,513	136,356	241,157	210,438
	감가상각자산	153,120	94,483	58,638	169,628
	유형감가상각자산	153,102	94,465	58,637	169,610
	무형감가상각자산	18	18	0	18
	토지	189,833	34,191	155,641	33,127
	주식	34,244	7,373	26,871	7,373
입목	316	310	7	310	
1986	계	389,755	165,466	224,289	222,561
	감가상각자산	215,848	141,617	74,231	198,713
	유형감가상각자산	215,826	141,596	74,230	198,691
	무형감가상각자산	22	21	1	22
	토지	172,387	22,503	149,884	22,608
	주식	1,393	1,297	96	1,191
입목	126	49	78	49	

4. 자산별 재평가 상황(계속)

(단위: 백만원)

	자산종류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취득가액
1987	계	1,244,996	494,516	750,480	854,449
	감가상각자산	789,507	397,743	391,764	758,853
	유형감가상각자산	789,504	397,741	391,763	758,851
	무형감가상각자산	3	2	1	2
	토지	401,554	80,155	321,399	78,979
1988	주식	36,292	15,910	20,382	15,910
	입목	17,643	708	16,935	707
	계	2,713,120	1,327,347	1,385,773	2,085,557
	감가상각자산	1,689,927	1,074,789	615,138	1,831,125
	유형감가상각자산	1,689,927	1,074,789	615,138	1,831,125
1989	무형감가상각자산	-	-	-	-
	토지	932,009	230,425	701,584	231,921
	주식	89,957	21,652	68,305	21,983
	입목	1,227	481	746	528
	계	10,512,647	5,545,292	4,967,355	10,377,885
1990	감가상각자산	8,852,066	5,293,711	3,558,355	10,125,827
	유형감가상각자산	8,852,037	5,293,682	3,558,355	10,125,798
	무형감가상각자산	29	29	-	29
	토지	1,424,061	200,061	1,224,000	200,556
	주식	230,872	48,142	182,730	48,142
1991	입목	5,648	3,377	2,271	3,360
	계	1,884,225	718,582	1,165,643	1,005,025
	감가상각자산	929,197	612,034	317,163	898,796
	유형감가상각자산	929,193	612,030	317,163	898,792
	무형감가상각자산	4	4	-	4
1992	토지	951,550	104,563	846,987	104,244
	주식	3,283	1,895	1,388	1,895
	입목	195	90	105	90
	계	5,446,630	1,350,572	4,096,058	2,111,207
	감가상각자산	1,813,035	1,063,109	749,926	1,819,618
1993	유형감가상각자산	1,813,035	1,063,109	749,926	1,819,618
	무형감가상각자산	-	-	-	-
	토지	3,559,148	260,197	3,298,951	266,008
	주식	69,896	26,861	43,035	25,176
	입목	4,551	405	4,146	405
1994	계	3,058,887	389,599	2,669,288	729,181
	감가상각자산	438,035	201,628	236,407	542,371
	유형감가상각자산	438,035	201,628	236,407	542,371
	무형감가상각자산	-	-	-	-
	토지	2,552,672	171,410	2,381,262	170,166
1995	주식	66,094	16,315	49,779	16,395
	입목	2,086	246	1,840	249

4. 자산별 재평가 상황(계속)

(단위: 백만원)

	자산종류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취득가액
1993	계	8,186,361	2,103,895	6,082,466	3,064,726
	감가상각자산	2,715,132	1,619,018	1,096,114	2,581,816
	유형감가상각자산	2,715,132	1,619,018	1,096,114	2,581,816
	무형감가상각자산	-	-	-	-
	토지	5,204,869	312,398	4,892,471	310,424
주식	260,121	171,504	88,617	171,504	
입목	6,239	975	5,264	982	
1994	계	1,266,340	136,205	1,130,135	425,406
	감가상각자산	248,438	80,270	168,168	364,076
	유형감가상각자산	248,438	80,270	168,168	364,076
	무형감가상각자산	-	-	-	-
	토지	1,017,212	55,609	961,603	61,004
주식	-	-	-	-	
입목	690	326	364	326	
1995	계	6,633,571	1,034,187	5,599,384	2,346,787
	감가상각자산	1,522,232	640,597	881,635	1,961,124
	유형감가상각자산	1,519,552	639,517	880,035	1,958,826
	무형감가상각자산	2,680	1,080	1,600	2,298
	토지	4,814,109	296,634	4,517,475	288,899
주식	262,991	91,469	171,522	91,268	
입목	34,239	5,487	28,752	5,496	

주 : 재평가차액 = 재평가액 - 장부가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